

# 『창작과비평』

## 통권 120호 기념 정기구독자 대모집

2003년  
5월 31일까지

### 신청자와 연장자 혜택 ■ ■ ■

**특전 1** 이 기간에 정기구독을 3년 이상 신청(연장)하시는 분에게는 다른 1명에게 1년간 「창작과비평」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특전 2** 이 기간에 신청(연장)하시는 분에게는 종전 구독료를 적용해 대폭 할인해드립니다.

구독료: 1년 48,000원(정기)  $\Rightarrow$  38,000원 / 2년 96,000원(정기)  $\Rightarrow$  76,000원 / 3년 144,000원(정기)  $\Rightarrow$  108,000원 / 5년 240,000원(정기)  $\Rightarrow$  180,000원 / 10년 480,000원(정기)  $\Rightarrow$  320,000원

**특전 3** 단행본 증정+지난호 1권  
본사도서: 「고쳐쓴 한국근대사」, 「고쳐쓴 한국현대사」, 「흔들리는 문단체제」, 「에코페미니즘」, 「문학의 귀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편, 근세상편, 근세하편, 현대편) 「나의 서양미술 순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2·3권) 「나는 빠리의 텍사운전사」, 「숲」, 「성진강」, 「시를 찾아서」, 「그리운 여우」, 「어두워진다는 것」, 「거미」, 「손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멋진 한세상」, 「모내기 블루스」, 「루이 뷔통」 등 (2년부터 2년 2권, 3년 3권 등의 방식)  
5년 구독시 위 단행본 5권 대신 「영국노동계급의 형성」(1권), 「전지구적 변환」, 「라캉의 재탄생」 중에서 1종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정기구독 권유자 혜택 ■ ■ ■

**특전 1** 6명 이상 권유해주신 모든 분께 작가와 떠나는 문화기행(6월 중 1박 2일)의 기회를 드립니다.

**특전 2** 5명 이하의 경우 1명 권유해주실 때마다 본사 도서 1권을 기증해드립니다.

**특전 3** 가장 많이 권유해주신 분 3명에게는 본사 도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1등: 50만원 상당 / 2등: 30만원 상당 / 3등: 20만원 상당

신청은 전화나 E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02-716-7876, 7877, 080-900-7876(수신자부팅)
- E-mail: reader@changbi.com
- 홈페이지: www.changbi.com

(주)창작과비평사

www.changbi.com 718-0541~4

2003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

2003. 3. 11~13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Sungkonghoe University Pittsburgh Hall / National Assembly Building

2003 국제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CPhl.74

주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친우봉사회(AFSC)

후원: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Organized by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Center for Human Rights and Peace,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KSCO), Society for the Research of Human Rights Polic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2003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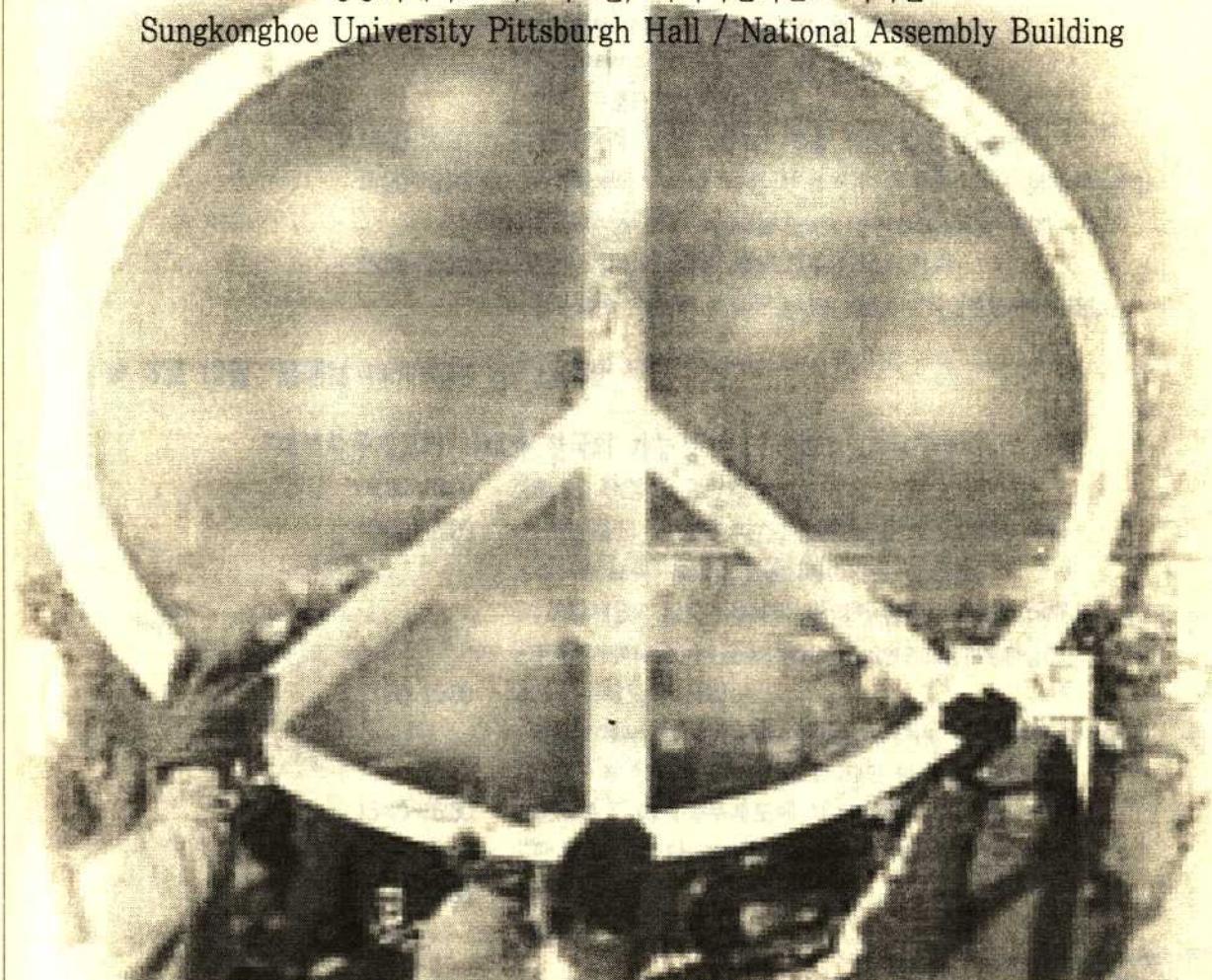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한국의 현황과 전망

2003. 3. 11~13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Sungkonghoe University Pittsburgh Hall / National Assembly Building



주최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친우봉사회(AFSC)

후원 :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Organized by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Center for Human Rights and Peace, SungKongHoe University, Korea Solidarit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KSCO), Society for the Research of Human Rights Polic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 행 . 사 . 일 . 정

● 3월 10일 환영만찬 늦은 6시 철학까페 느티나무, 사회: 민변 오재창 변호사

● 3월 11일 첫째날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세계 현황과 전략” 사회: 한홍구 교수

09:30-10:00 개회사, 환영사, 참가자소개

10:00-11:30 각국의 병역거부현황 및 증언

• 이스라엘 (아미르 지볼 Amir Givol)

• 유고슬라비아 (이고르 세케, Igor Seke)

• 한국 (유호근, Yu Ho-Gun)

14:00-14:20 다큐멘터리 상영 '(가제)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14:20-15:20 <기조발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최근 현황과 전망

• 안드레아스 스펙 Andreas Speck (반전인터내셔널, WRI)

15:30-17:30 <토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 기본발제: 제임스 라일리 James Reilly (미국친우봉사회, AFSC)

● 3월 12일 둘째날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대체복무제도의 사례와 한국의 가능성” 사회: 임종인 변호사

09:30-10:00 개회사, 환영사(효림스님)

10:00-12:00 <기조발제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 레이첼 브렛 Rachel Brett (퀘이커스, Quakers)

<기조발제2> UN,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 루씨에 비에르스마 Lucie Viersma (UN인권고등판무관실)

13:30-15:30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 독일 - 페터 토피아슨 Peter Tobiassen (독일 병역거부자 지원연대)

• 대만 - 청 타이 리 Chung Tai Li (대만 병무청 부청장)

15:45-16:30 패널토론: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개혁국민정당

16:30-17:30 전체토론

17:30 폐회사

● 3월 13일 셋째날 - 연대, 현장을 찾아서

09:00-10:00 영등포 구치소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특별면회)

10:00-12:00 기자간담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역사

18:00-21:00 송별만찬 및 연대를 위한 문화의 밤 서울대학교

번역을 맡아 수고해주신 분들

정원교, 신해경, 김형렬, 이수지, 홍영일, 이정현(서울대), 김기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종익(동성애자인권연대),  
느림, 오리, 홍창욱, 정용욱, 손상열(이상 평화인권연대) 외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Program

- 10. March Mon 6:00 pm Welcome reception Venue: Neutinamu
- 11. March 1st Day (Tue) Venue: Pittsburgh Hall, SungKongHoe University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O movement"*  
Moderator: Honggoo Han (SungKongHoe University)
  - 09:30-10:00 Welcome address/ Rev. Hyorim (KSCO)
  - 10:00-11:30 Status of CO movement and national initiatives with testimony
    - The Former Yugoslavia (Igor Seke)
    - Israel (Amir Givol)
    - S. Korea (Hokeun Yoo)
  - 11:30-12:30 Discussion
  - 14:00-14:20 Film screening
  - 14:20-15:20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O movement / Andreas Speck (WRI)
  - 15:30-17:30 Forum/Discussion: Strategy planning of CO movement /James Reilly (AFSC)
- 12. March 2nd Day (Wed) Venu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ses of alternative services, the possibility of Korea"*  
Moderator: Jongin Im (MINBYUN)
  - 09:30-10:00 Opening remarks, Welcome address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10:00-12:00 Meaning and History of C.O to Military Service
    - Rachel Brett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Quakers))
  - UN,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 and Practices of Alternative services
    - Lucie Viersma(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13:30-15:30 Cases of alternative services
    - Peter Tobiassen(Zentralstelle fur Recht und Schutz des KDV, Germany)
    - Chung Tai Li(Vice-Representative of Conscription Administration, Taiwan)
  - 15:45-16:30 Standpoint of each political Party on CO
  - 16:30-17:30 Floor discussion
  - 17:30 Closing remarks
- 13. March 3rd Day (Sat)
  - 09:00-10:00 Visit to the Seoul Detention Center interview with a c.o. imprisoned
  - 11:00-12:00 Press Conference Venue: Neutinamu
  - 12:00-14:00 Meeting with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18:00-21:00 Farewell Dinner/Solidarity Night

## 환·영·의·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효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대회의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감옥에는 1500여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지만, 최근에는 비종교적인 동기에 기초한 새로운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인들만의 행동양식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심성에 기초하는 신념의 발현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한국사회에는 일제식민지시대로부터 군부독재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로 인한 신체적 구속과 정신적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해마다 증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 진정성에 기초한 이 행위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존엄의 문제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8개국의 해외참석자가 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자신 스스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거나 혹은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활동과 정책집행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곧 병역거부 행위가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을 증명합니다. 이렇듯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대와 공간, 종교와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는 보편적 속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인류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류애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분단국가입니다. 남과 북의 이념대립은 400여만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던 한국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가슴 아픈 경험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피폐한 전쟁경험은 30년 넘게 이어진 군부 독재정권의 국가안보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며 한국사회에 강력한 군사주의, 군사제도, 군사문화를 광범위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그것은 신성화된 징병제를 통해 유지,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반국가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탄압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대다수 국민은 물론 진보적인 사회운동세력에게서도 관심의 영역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80년대의 전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확산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드디어 2001년 봄, 평화와 인권의 햇살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1만여 병역거부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끝내 한국 국민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실현시키고 민간대체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2002년 2월 4일, 40여개 종교·평화·인권단체와 개인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연대회의는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민간단체참가단을 파견하여 한국사회의 실상을 알리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제도적 인권보장의 현실적 방안인 대체복무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에는 이번 국제회의의 사전행사로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장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사법부의 협집행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병역거부자의 50%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감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연대회의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민간대체복무의 길을 보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징병제도는 현역복무 인원의 30%에 달하는 인력을 비전투분야의 공공영역에 배치함으로써 매우 탄력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해 500여명이 채 안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민간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징병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분단국으로서 오래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그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를 통해 그것은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여러분, 외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평화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이번 행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화와 만남을 통해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 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적 공공이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찾아 빛내주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 한글본 차례

### ■ 해외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 |                                       |          |
|---------------------------------------|----------|
| 1/ 반전인터내셔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 안드레아스 스페 |
| 4/ 미국친우봉사회(AFSC)와 동아시아 퀘이커 국제사무소 프로그램 | 제임스 라일리  |
| 6/ 새로운 윤곽운동-문명화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운동       | 아미르 지볼   |
| 9/ 반군사주의 제작소와 이고르 세케                  | 이고르 세케   |
| 1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사무소      | 페터 토비아센  |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세계 현황과 전략

- |  |           |
|--|-----------|
| 12/ 2003년 이스라엘 병역거부 현황에 대한 보고서               | 아미르 지볼    |
| 20/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 이고르 세케    |
| 28/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 유호근       |
| 32/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 안드레아스 스페  |
| 4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 제임스 라일리   |
| 51/ <u>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역사</u>                  | 레이첼 브렛    |
| 56/ 국제 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대체 복무제도의 시행 | 루씨에 비에르스마 |
| 71/ 독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 페터 토비아센   |
| 82/ 중화민국시행 대체복무제도 소개                         | 청 타이리     |

## 반전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안드레아스 스펙

###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전인터내셔널(이하 WRI) 정책의 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WRI의 선언은 어떤 군대나 무장세력에도 복무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외침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의 외침입니다.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가 허용되는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이 조차도 거부하든지 간에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합니다. WRI는 살인을 거부하고자 하는 한 개인의 동기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서 전쟁과 전쟁준비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결심에 대해 그 가치의 경증을 판별하여 하지 않습니다.

### 전쟁반대

WRI는 그 어떤 종류의 전쟁 - 한 국가에 의해 벌어지는 전쟁은 물론 해방군의 전쟁이나 연합국들의 지원 하에 벌어지는 전쟁, 심지어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이라고 불리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아무리 수사적으로 승고하게 표현될지라도 늘 몇몇 권력집단에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고통과 파괴를 수반하고, 약탈과 조직범죄를 발생시키며 가치전복과 새로운 지배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RI의 프로그램인 ‘살인을 거부할 권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 조직된 단체들과 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범위의 활동들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운명처럼 되어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핀란드, 스페인 그밖에 다른 여러 국가에서 수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인정 기준에 맞출 수 없거나 어떠한 대체복무 수행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혹은 국가나 유사국가체의 억압으로 투옥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는 이러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간 것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 경보'는 이메일(majordomo@wri-irg.org)로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 메일링 리스트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이나 웹사이트 [wri-irg.org/cgi/news.cgi](http://wri-irg.org/cgi/news.cgi)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소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종종 그들의 나라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망명의 자유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들의 나라로, 즉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상황으로 다시 추방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망명의 자유로 허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WRI는 자국의 병역에 관한 정보, 징병회피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차별에 관한 정보 등을 제시하며 망명을 요구하고 망명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 지원 기구들의 연합체 역할로서 전 세계의 징병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자료화하는 CONCODOC(Conscrip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Documentation Cent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실은 전 세계 단 하나뿐입니다. 웹사이트 [wri-irg.org/co/form.htm](http://wri-irg.org/co/form.htm)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CONCODOC의 180여 국가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은 스페인어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캠페인 지원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새로운 운동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WRI는 가장 중요한 작업의 하나로서 새로운 병역거부운동들 - 연대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활동가 교육, 그리고 활동가들의 경험 교류 -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같은 활동이 터키(특히 오스만 무랏 Osman Murat의 구금기간 동안)와 발칸반도 국가들에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서의 투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들은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WRI는 두 가지 국제행동의 날 - 평화운동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날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날 - 을 조화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5월 15일 행동의 날은 1982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날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위한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됩니다. WRI는 대개 매년마다 한가지 특정한 투쟁에 중점을 둡니다. 동시에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로 복역했던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합니다.

###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엽서를 보내고, 이들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전쟁 및 전쟁준비에 반대한다는 수감자들의 평화적 입장을 지지하는 행사입니다.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은 1950년대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WRI가 수감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것을 요청했던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미국친우봉사회(AFSC)와 동아시아 퀘이커 국제 사무소 프로그램

제임스 라일리

퀘이커(Quaker)의 독립 조직인 미국친우봉사회(이하 AFSC)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17년 설립되었다. 오늘날 AFSC는 전 세계 22개 국가와 미국 내 43개 지역에서 봉사, 발전, 사회정의, 평화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오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후원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AFSC의 프로그램이 거대한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지닌, 그리고 가난과 무기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닌 미국의 지역사회 내에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AFSC는 이민자, 밀입국 노동자, 소농, 농장노동자, 망명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끊주리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는 노숙자, 실업자들을 대변한다. AFSC는 인디언 보호구역, 고등학교, 아팔라치아와 뉴멕시코 북부와 같은 시골 지역, 번잡한 도시, 감옥,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대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공장 등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FSC의 해외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전쟁과 억압의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 없이 식량과 의료를 제공해 왔다. 1947년, AFSC는 영국 친우봉사회와 함께 전 세계 퀘이커 교도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이름 없는 자들로부터의 이름 없는 자들에게로의 소리 없는 도움”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오늘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캐리비안, 인도차이나,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AFSC 담당자들은 그 곳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 퀘이커 국제사무소 대표부(Quaker International Affairs Representatives, 이하 QIARs)는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평화와 정의, 화해를 촉진하고 있다. 그들은 민중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 그 중 동아시아 퀘이커 국제사무소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이웃 공동체 설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체는 한반도의 화해, 대화와 지역적 안보구조를 통한 지역 내 분쟁의 해결, 그리고 넓게는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아시아 QIARs는 1994년 이후로 지역 내 시민사회조직 간의 교류를 촉진해왔다. 그들은 무기교역과 안보 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해왔으며, 평화교육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학자와 관련 활동가들을 함께 베이징으로 초청하였고, 한국과 중국 환경운동단체 간의 협력을 도왔다. 또한 한국의 NGO와 협력하여 갈등 해결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train-the-trainer’를 1년 반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증폭되었던 미국과 중국사이의 긴장은, QIARs가 중국의 여러 단체와 접촉을 늘리고 미국 정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에 항의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QIARs의 대표단은 북한과 미국을 왕래하며 양국이 좀 더 폭넓고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 중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 전반을 광범위하게 둘러보며 작성한 여러 분석과 경험들을 각종 연설과 글 등을 통해 미국 내 지지자들과 공유한다.

갈등을 평화적이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AFSC 프로그램은 억압받는 자이든지 억압하는 자이든지 간에 모든 삶은 신성하다는 퀘이커의 신념을 반영한다. 미국 내 20개 이상의 지역에서 AFSC 활동가들은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만들어 내고 미국의 평화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한다.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들을 찾아내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가의 여론 형성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AFSC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이용하여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와 언론매체들의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뉴욕의 퀘이커 국제 유엔사무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계’라는 원칙에 헌신하려는 친우봉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AFSC는 북미지역의 23개 퀘이커 연례모임(지역 교회의 본체들)에 속한 180명의 퀘이커교도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다. AFSC의 국제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있으며 여덟 개 주에 지부를 두고 있다. 단체의 구성원으로 꾸려진 AFSC 이사회는 AFSC의 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한다. 수많은 위원회들은 4백 명 이상의 남녀 활동가들과 함께 AFSC의 운영을 감독하고 상의한다. AFSC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후원자들이 지원하고 있다. AFSC의 연간 예산은 약 3천3백8십만 달러이다.

퀘이커교도들은 양심, 개인의 종교적 체험 그리고 공동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의 권위를 사도신경이나 전통의 권위보다 우위에 둔다. AFSC는 종교친우회의 숭고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퀘이커 회의에 의해 지도되고, 퀘이커교도와 AFSC의 사명을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과 함께, AFSC는 17세기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가 “네가 가는 모든 지역에서, 장소에서, 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네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귀감과 모범이 되어라 : 너의 삶이 그들 모두 가운데에서 설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 내면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대답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걷게 될 것이니....”라고 친우들에게 역설한 말씀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AFSC은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능성을 존중한다. 이는 구조나 이데올로기보다는 사람을 강조함을 의미한다. AFSC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퀘이커의 믿음에 기반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

# ‘새로운 윤곽 운동’ (The New Profile Movement) : 문명화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운동

아미르 지볼

New Profile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주목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군사주의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신념은 자연스럽게 우리 단체를 만들게끔 했습니다. 이 운동의 주체인 여성주의자, 남성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대중적이며,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New Profile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를 반영합니다; 전쟁과 무력으로 군사화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모든 민중의 권리가 동등하게 고려되고 촉진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행위가 종결되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영국가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확실한 평화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군사화된 사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파트너가 계속해서 끝없이 동원되는 삶을 살 필요도, 또한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야할 필요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상황이 정치인들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속물인 군대에 병사들이 충원되는 것에 결코 순종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국 책임자들이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 군대를 이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한, 우리는 결코 동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원을 위해 아이를 기르지도, 동원된 파트너와 형제, 아버지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영국가에서는 평등한 시민과 덜 평등한 시민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충부는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남자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이들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전사로서 그들은 특권화된 지식을 독차지하도록 되어있고, 정책결정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안보’와 관련된 정책에 의심을 갖거나, 국가의 막대한 국방예산 혹은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순진한’, ‘히스테리컬한’, ‘무지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자진해서 입대한다는 기본원칙에 감히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는 병영국가에서는 거의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법으로 부정됩니다.

우리의 ‘무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영속시켜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삶의 보장을 위해 고통스런 양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린라인 너머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요된 이스라엘 주권을 실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군대, 경찰, 보안대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집을 부수고 건축과 개발권을 부정하며 그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부여된 특정 역할들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폭넓은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수 천명의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현재 징병이나 전투참여 의무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의 군복무의 의미와 자기 자신 사이의 관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선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군대에 부적합하다거나 부실한 건강을 이유로 면제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법은 남성들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징병법을 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남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젊은 여성들 또한 병역면제위원회의 질문에 곤란해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은 모든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 그들의 기본적 권리가 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비정부적, 자율적 단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사회공동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입대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길도록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입대시키고 전쟁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주적인 시민 교육을 위해 평화와 갈등해결의 실례를 가르치는, 그런 근본적으로 변화된 교육 시스템을 원합니다.

## 우리의 활동

New Profile은 부서별 체계를 두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책임이 부여된 직위인 사무국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의 참여가 자율적입니다. 다른 지위들과 모든 위원회의 업무는 위계적이지 않은 소규모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보수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합니다. 연락망을 만들고 정보를 모으는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팀은 모금 활동을 합니다. 전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회의 장소는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정하며, 각 회의는 매번 서로 다른 구성원의 집에서 열립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돌아가면서

회의 내용을 적고, 이후에 타이핑된 회의록을 이메일로 돌려 회람합니다. 이러한 로테이션제도는 권력을 분배하고 권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 우리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1. 징병제 재고: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구별 없이, 군대징집에 저항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제공.
2. 탈군사화 고취: 군사주의의 역효과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켜, 새로운 관점을 확고하게 공공 의제화 하고, 군대와 이스라엘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에 영향을 준다. 비폭력과 비군 사화 교육에 강조점을 둔다.
3. 스터디 그룹과 성인 커리큘럼 개발: 폐미니스트 스터디 그룹들 사이의 네트워크 설립.
4. '올바른 평화를 위한 여성 연합'과의 교류: 이스라엘 군대와 경찰의 호전적 공격에 대한 항의, 차별철폐 조처를 위한 연대활동

### 연락처

New Profile, P O Box 3454 Ramat Hasharon 47100.

<http://newprofile.org>

newprofile@speedy.co.il

### 후원 계좌번호

HaPoalim Bank, account no. 421121, Branch 769, Trumpeldor St., Ramat Hasharon, Israel

총액 105우

## 반군사주의 제작소와 이고르 세케

### 이고르 세케

#### 개인 소개

1975년 10월 23일 출생.

노비 사드(Novi Sad)에 있는 정보과학 대학과 베오그라드대학교 철학부 인류학과에서 수학.

지금까지 저는 지역 내 유일한 반군사주의 뉴스레터인 'Prigovor!'('거부'라는 의미)의 편집자 또는 공동편집자로 일해왔습니다. 'Prigovor!'는 베오그라드(역자 주-유고슬라비아의 수도)에 있는 여성반전단체 '우먼 인 블랙'(Women in Black)에 의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으며 현재까지 열 번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우먼 인 블랙'의 양심적 병역거부 그룹 활동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참가해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승인을 위해 3만 명으로부터 입법발의 서명을 받았고, 웹 페이지([www.antimilitarizam.org](http://www.antimilitarizam.org))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리 시위에 참가하고, 전단지와 소책자를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유고슬라비아 NGO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나는 수많은 거리시위와 원탁회의, 기자회견, 세미나(유고연방 및 해외에서) 등을 조직하고 참가했습니다.

2002년 9월에 저는 징집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복과 무기 수령을 거부하며 징집에 반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만으로 병역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후 반전인터네셔널(WRI),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 사무국(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이하 EBCO) 그리고 몇몇 다른 조직들은 저의 병역 면제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그것은 성공적이었다). 그 결과 고등군사의료위원회로부터 병역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 면제되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는 EBCO, RAI, Balkans Ayuda Obrera 등과 같은 바르셀로나의 몇몇 평화운동단체에 의해 구성된 '동남부 유럽 국가의 양심적 병역거부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to Develop CO in South-East European Countries)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EBCO Balkan'이라는 EBCO의 지부를 베오그라드에 설립했습니다.

#### 단체 소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반군사주의 제작소'(Antimilitaristic Manufacture)라는 단체입니다.

다. 우리는 2002년 6월에 반군사주의와 평화주의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전국 NGO 네트워크 내에서 2년 이상 비공식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그룹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 그룹은 주로 각종 자료들(단행본, 소책자,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는 음악가들의 CD,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세르보크로아티아어(역자주-유고슬라비아에서 사용되는 슬라브계의 말) 웹페이지 [www.antimilitarizam.org](http://www.antimilitarizam.org) 운영 등)을 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외국 자료를 번역 해왔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내 저술가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반군사주의와 평화주의 이슈에 대한 저작들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룹은 보스니아의 'Zasto Ne?', 크로아티아의 '반전 캠페인'(AntiWar Campaign), 마케도니아의 '평화행동'(Peace Action) 등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지역 네트워크인 '평화를 위한 거부'(Objection for Peace)를 설립하였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 사무소

페터 토비아슨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중앙 사무소'(Zentralstelle fuer Recht und Schutz der Kriegsverweigerer aus Gewissensgruenden e. V.)는 독일에 징병제가 재 도입된 직후인 1957년에 설립되었다. 이 사무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26개 단체들의 공동 조직으로서, 인권단체, 몇몇 교회의 청소년 단체, 노동조합과 정당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반전평화단체들의 조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앙 사무소의 활동은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의회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와 정부당국이 도입한 차별적인 법규 폐지 운동을 지원한다. 중앙 사무소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전하는 활동은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한 이들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게 된다.

중앙 사무소는 징병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집총이 강요되지 않을 때만이 최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 사무소의 재정은 회비(10%), 기부금(50%), 각종 자료 판매(30%), 그리고 기타 수입(10%)을 통해 충당한다. 사무소에는 3명의 상근 활동가가 있으며, 단체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만여 명의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있다.

### 주소

Zentralstelle fuer Recht und Schutz der Kriegsdienstverweigerer aus Gewissensgruenden e.V.  
Dammweg 20  
D-28211 Bremen  
Germany  
전화 : (0)421/340025 팩스: (0)421/3479630  
이메일: Zentralstelle.KDV@t-online.de  
인터넷: [www.Zentralstelle-KDV.de](http://www.Zentralstelle-KDV.de) 또는 [www.wehrpflicht-nein-danke.de](http://www.wehrpflicht-nein-danke.de)

## 2003년 이스라엘 병역거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아미르 지볼

### 들어가며

저는 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몇 가지 관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많은 면에서 분할되어 있고, 주요하게는 남녀간의 성역할 분할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나머지 인종, 주되게는 팔레스타인 소수민족과 그 하위그룹간의 국가적/인종적/종교적 분할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분할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에게 특징을 부여하는 몇 가지 독특한 이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주요하게 미디어와 법률시스템 내에서 병역거부위원 회의 업무,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지위, 대체복무와 병역거부의 일반적 개념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복무는 이스라엘 사회의 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복무는 모든 영주민, 주요하게는 유대인 남성과 여성, 드루즈인 남성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나 지원자들 중 정부방침으로 면제되는 사람들(건강 문제 등)과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 기타)도 있습니다.

남녀 모두 18세에 군복무에 소집되고,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45세까지 대개 일년에 한번 예비군을 소집됩니다.<sup>1)</sup>

모든 이들이 입대한다고 생각하지만(정부는 군대를 국민군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얼굴'이 군복무 면제비율을 추정하건데, 징집되기 전 대략 45%가 면제되고<sup>2)</sup> 나머지 10%가 복무기간동안 면제됩니다. 면제된 이들 중 어느 정도가 병역거부자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복무기간동안 면제됩니다. 면제된 이들 중 어느 정도가 병역거부자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만<sup>3)</sup>, 병역거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 현상은 이스라엘 사회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심각한(그리고 공공연한) 위협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회적, 신체검사상의 분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병역거부를 허락하도록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1)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몇몇 여성 또한 예비군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늦어도 24세까지는 예비군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 법에 의하면 이 연령은 51세이나 부대별로 실제로 45세에서 41세까지로 적용된다.

2) 이 수치는 자동적으로 병역에서 면제되는 팔레스타인인들, 인구의 20%를 포함한다. 그밖에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되거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군은 30세 이상의 이들을 입대시키지 않는다) 경우에 포함된다.

3) 실제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는 군대가 데이터를 기밀로 취급하며,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이 병역거부자임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나 혹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니다.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에서의 병역거부도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합니다.(예를 들면 아나키즘, 완전체식주의, 불교). 그러나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병역거부자를 완전거부자나 선택적거부자로 구분하는 것이 혼란 일입니다. 완전거부자는 평화주의자,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의 폭력에도 반대하는 자이며,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어떤 역종에서의 복무도 거부합니다. 반면 군대내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채식주의자는와 같이 선택적거부자는 자신의 신념이 이스라엘 군대의 어떠한 국면이나 상황을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완전거부자만을 병역거부자로 인정하고(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이 조차도 심지어는 공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실제에서는 아닌) 선택적 거부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선택적거부라는 명칭은 대개 많은 사례 중 군대가 실행중인 특정한 정치적 결정, 그 중에서도 특히 팔레스타인 영토의 점령에 (도덕적 근거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를 정치적거부라 간주하여 붙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운동은 주로 네 가지 주요한 활동들로 이루어집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얼굴'은 이스라엘 사회의 탈군사화를 지지하는 운동이기에 운동의 제의 일부로 모든 병역거부자를 지원합니다. '상급생의 편지(Shministim movement)'는 다양한 신념에 기반 하지만 공통적으로 점령에 반대하는 고등학교 상급생의 모임입니다. '예쉬그불(Yesh Gvul)'은 1982년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한 것에서 출발한 운동이며, 지금은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중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용기(Courage to refuse)'는 예비군이 주축인 군인들의 모임으로 주로 점령지에서 저질러지는 전쟁범죄(점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에 반대하여 점령지 내에 배치되는 것을 거부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알려진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점령에 대한 거부를 병역거부의 이유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은 정치적 거부자로 취급되어 개개인의 신념에 관계없이 선택적이며 불법적으로 간주됩니다.

### 여성 거부자들

우리가 전 세계 군복무에 대해 논할 때 종종 남성 병역거부만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sup>4)</sup> 남성이 유일하게 강제적으로 입영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 모두가 징집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매우 다른 유형의 군복무를 수행하지만, 다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에 대해 논할 때도 우리 또한 대개 남성만을 언급하는데, 이는 최근까지 우리가 남성 병역거부의 양상에 대해 좀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의 병역거부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보다 명확하게는 군복무에서 깊게 뿌리 박힌 여성에 대한 배타적 애국주의(chauvinist) 인식을 반영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군복무 또한 지원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식입니다. 이것은 여성 병역이 대개 잉여노동이며 여성의 활동이 가사와 출산에

4) 최근 수단에 여성 의무 병역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새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정될 때 사회를 좀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이끌어냅니다. 여성 군복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관심 때문에, 여성이 몇 가지 법적인 과정을 통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연히 여성은 결혼하거나, 임신하거나, 혹은 아이가 있으면 병역에서 면제됩니다. 정통 유대인 여성은 그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엄격한 조사 없이 군복무에서 면제됩니다. 여성 병역거부 진술하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엄격한 조사 없이 군복무에서 면제됩니다. 여성 병역거부 진술하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엄격한 조사 없이 군복무에서 면제됩니다. 여성 병역거부 진술하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엄격한 조사 없이 군복무에서 면제됩니다. 여성 병역거부 진술하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엄격한 조사 없이 군복무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병역은 이스라엘에서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 병역거부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록 여성병역거부위원회가 실제 (요청하는) 모든 이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더라도,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병역거부 신청자의 신념에 상처나 흠집을 내려는 불쾌하고, 창피스러우며 굴욕적인 과정(노골적인 언어적 욕설을 포함하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병역거부위원회의 업무가 무엇인지(예를 들면 초기 결정을 드러낼 권리), 신청자 권리, 심지어는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위원회의 존재와 같은 적절한 정보를 숨기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병역거부위원회 자체는 거의 배타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군 관계 인원들로 구성되어집니다. 많은 신청서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어지며 오로지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녀의 고결함과 결심을 테스트한다는 그럴듯한 목적으로 신청자의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거부되어집니다.

여성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쏟지 않는 동안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군대에 입영해야 할 것이며, 종종 가족과 친구들로부터<sup>5)</sup> 매국노나 반사회적 인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여성들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신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 그들의 선택과 권리에 관한 적절한 정보 없이, 대개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성의 군복무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에게, 심지어는 여성주의자들에게 조차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중점을 둬야만 하는 병역거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 병역거부가 절대 쉬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며, 군사주의가 사회의 성별구분을 재생산하는 매우 위험적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성 병역거부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우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남성병역거부위원회

5)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병역거부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하긴 힘들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그것에 반대하며, 그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선택을 지지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불 운하게도 실제로 병역거부의 지지자들은, 이론적인 단계에서 병역거부지지를 반대할 때, 이러한 관문을 통과하기 힘들다.

이스라엘 사회의 성별구분은 남녀에 대한 서로 다른 모습의 기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보조적 위치에 국한되어있는데 반해, 남성 자신은 여러 업무 중 군대 내에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전투병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위치 지위집니다.(최고의 남성은 군 항공사에서 항공술 관련 복무를 하고, 최고의 여성은 군 조종사가 된다는 속담에서 명확하게 잘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적합한 유대인 남성은 군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따라서 남성 병역거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몇 번의 청원이 국방부에 제출되고, 1995년 병역거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방장관은 병역거부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스라엘 병역법의 조항들을 근거로 국방장관이 승인한 사람으면 누구든 군복무를 면제할 수 있다. 비록 이 법이 남성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법적 인정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위원회는 명확한 법규 등의 법적 수임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폐지될 수 있고, 병역거부자를 석방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사실상 군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병역거부위원회의 존재와 그 법규에 대한 정보의 부재, 그리고 대개 군 당국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위정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원회에 병역거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병역거부 위원회와 달리 남성 병역거부 위원회는 평화주의자의 신청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거부의 다른 유형들은 그 이유조차 듣지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이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양한 이유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매우 차별적인 것이며 병역을 거부하지만 소위 병역거부의 승인에 의해 완벽히 거부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위원회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떠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많은 수의 병역거부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화주의자들이 병역거부 위원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역거부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위원회의 실제적 절차들에 따르면(정해진 규칙들이 없기 때문에) 평화주의자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정치적거부자가 될 것이기에), 열렬한 채식주의자나 완벽한 채식주의자로 여겨질 것입니다.(비록 평화주의와 동물애호 사이의 관계가 정황적인 것일지도라도) 또 평화주의자는 신체적으로 부피가 큰 사람(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낮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폭력적일 것이고 그래서 폭력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들이 위원회 설립 이전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위원회는 모든 신청들을 거부하려는 시도와는 별개로 자체 규정이나 일관된 무엇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일관된 이유도 없이 한 응큼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봤을 때, 위원회 자체의 평화주의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평화주의자(혹은 누구든 그러한 신념을 반반이라도 가진 사람)가 그것을 정의 내리는지 사이에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보다 많은 걱정거리를 야기하는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명백한 정치적 의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은 많은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시험에 들게 하였고 특히 전쟁이나 극단

적인 폭력의 시기에 군복무를 요청 받았을 때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재의 전쟁상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그런 까닭에 선택적거부자로 여겨집니다) 병역거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위원회의 주요한 업무가 자신들의 본분에 따라 병역거부 신청서를 심사하기보다 병역거부 불가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찾는 것이 주 업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모든 위원회 구성원들이 신청인의 신념을 고려하기보다 군 관계자들의 필요에 의한 비공식 정책을 고려하는 군 인원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군대의 요구와 신청인의 군사적 유용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능력에 따라 임명됩니다. 이들은 신념과 이데올로기애 있어 어떠한 훈련을 받거나 관련 소양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그러한 소양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결국 위원회에 의해 군복무가 면제된 몇몇 사람(거의 예비군이 전부인)조차도 이러한 면제 사유가 병역거부에 의한 것이었다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부적합'을 이유로, 또 다른 몇몇은 마치 요구받아서 군복무를 마친 것처럼 단지 제대한 것으로, 나머지는 법적으로 제대한 것으로(제대통지서에 의하면) 군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누구도 병역거부로 제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 병역거부 위원회와 유사하게 남성 병역거부 위원회는 거의 비밀에 부쳐져 있고 심지어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군의 대다수에게 조차 알려지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5년 이후 위원회 업무에서 약 250여명의 신청만이 취급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998~2000년간 위원회 업무에 관해 제출 받은 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신청의 8%만이 군복무에 면제되었습니다.(115명 중 9명)<sup>6)</sup> 세계의 다른 병역거부 위원회에 의해 처리된 업무와 비교할 때 8%의 군복무 면제 비율은 어이가 없는 결과입니다.(예를 들면 핀란드의 병역거부 위원회는 신청의 70%를 군복무 면제조치하고 매우 엄밀하게 이를 고려합니다)

병역거부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 외에 병역거부자가(그리고 다른 이들 또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체와 정신에 대한 의학적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는 군대의 의료면제 코드 "프로파일21(profile 21)"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의 처리와 달리 군은 건강을 이유로 한 면제에 관해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거부 위원회의 낮은 군복무 면제 확률에 직면할 필요 없이, 군복무를 피할 방법으로 이를 이용합니다. 누구나 복무할 곳(부대나 감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군복무에 부적합한 이들에게 군복무 면제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적합" 위원회에 보내지게 됩니다. 부적합 정도가 덜한 사람들에게는 해외로 갈 가능성이나 소집시 단순히 나타나지 않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물론 부분적인 해결이 되겠지만 오히려 대개 단기 복역 후 "부적"입니다.

6) 군복무가 면제되지 않은 신청자 중 10명은 부분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부분적인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가지 사례를 통해 부분접수의 의미가 한해 입영연기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합"을 이유로 군복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 위원회에 신청하기보다는 병역을 피하는 다른 수단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우 법을 어겨야만 했고 아니면 최소한 정직하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 수감된 병역거부자

남성 병역거부 위원회의 불쾌한 점 중 하나는 최근 이스라엘 군의 수장이 어떤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군은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진정한" 병역거부자는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관해 제기된 비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남성 병역거부자로 공표된 이들은 군복무를 면제받을 대체 루트를 이용할 수 없고, 병역거부 위원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엔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의 수감은 군대의 공식적인 정책이며 처벌, 강제입영 시도, 혹은 다른 의미로는 그들의 신념을 배반하게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병역거부자 수감 절차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병역거부자는 지정된 군부대(보통 훈련소)에 도착해 병역거부를 선언합니다.(혹은 점령지에서의 복무거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장교가 그에게 입대를 권유하고 이후 '항명'을 이유로 약 1달간 처벌)을 받게 됩니다.<sup>8)</sup> 신병의 경우 그들은 재처벌과 재수감에 처해집니다. 이는 동일 범죄로 재처벌 받지 않을 시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병역거부자는 2~3번 수감(약 3개월)되고 이후 부적합 위원회에서 군복무가 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2~3번이던 수감 횟수가 놀랄만큼 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몇몇 병역거부자는 7~8번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된 수감이 이스라엘 사법시스템에 의해 인권유린으로 여겨지지 않는 동안 병역거부자에게 선고되는 수감기간의 형량이 전적으로 병역거부자를 책임지고 있는 군장교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내외 압력이 군사법 당국의 반복적 수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짐은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이 이슈에 대한 압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sup>9)</sup>

점령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그러나 군복무전반에 반대하지 않는) 예비군의 경우 그들은 보통 한번 수감되며(약 한달), 이후 집에 보내집니다. 그들이 다시 수감되는 경우는 부대가 재

7) 군사법정(marshal court)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피고인이 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하도록 하는 것이 법정의 기본이나, 그의 주장은 대부분 무시된다.

8) 물론 이러한 절차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군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정식재판을 피하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례를 알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차라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비록 이러한 절차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9) 수감된 병역거부자와 관련한 활동지침들은 '새로운 얼굴' <http://www.newprofile.org> 나 '상급생의 편지' <http://www.shministim.org>에서 접할 수 있다.

소집 되었을 때(보통 1년에 1번)가 유일합니다. 많은 경우 점령지 복무를 거부하는 예비군은 특별 고려대상이 되고 자신의 부대로부터 동떨어진 점령지 바깥에 배치됩니다.

감옥 안에서 병역거부자는 그들 신념에 대해 어떠한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직원과 다른 피수용자들은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해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이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의 원인이 되며 만약 감옥 관계자에게 협조하기를 거부했다면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독방감금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유니폼 착용이나 두발규정의 거부, 명령 불복종, 감옥 내 노동의 일부로 군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 드루즈인 병역거부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인은 군복무에서 면제되나 팔레스타인인은 드루즈인과 베두인 남성들은 군대에 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드루즈인을 의무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인으로, 권리에 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대인인 이스라엘인과 비슷한 의무, 주되게는 장기병역의 의무를 가지며(여성은 제외하고), 각종 기금이나 시민권과 같은 문제에서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드루즈 남성의 입대는 1950년대 이 공동체의 전직 대표가 서명한 역사적 합의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sup>10)</sup>. 그리 고 지금까지 많은 드루즈 남성이 군복무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드루즈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혹은 단순히 그들 동료인 팔레스타인인과의 분쟁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루즈인 병역거부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군대에 하기 위해서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를 취급하는 정도는 전통적으로 유대인 병역거부자에 비해 훨씬 가혹했으며,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는 보통 더 오랜 기간 수감되었다. 가혹한 처우에 대해 알고 있는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들 중 대다수는 더 오랜 기간 수감될지라도 병역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많은 드루즈인 병역거부자들은 보다 가혹한 처벌의 공포 때문에 자기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 대체복무

이스라엘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에서 면제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국가복무(National Service)”에 참가합니다. “국가 봉사”는 군복무를 하진 않지만, 다른 시민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기여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설립된 1-2년 기간의 자발적 시스템입니다. “국가복무”를 이수한 사람들은 제대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래 “국가복무”는 정통유대인여성(앞에 언급했듯 신청서에 서명하면 자동으로 면제되는)이 병역에 대한 대체적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최근까지 “국가복무”는 국가복무법에 의해 정의된 법적 제도로서 오직 정통유대인이나 다른

10) 이 합의안은 아직까지 유효하나 현재 몇몇 대표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여성들에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면제된 남성 또한 “국가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 군복무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결론

중동지방의 격한 전시상황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은 점점 시험에 놓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해 몇 가지 절차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활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1998/77 결의안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 결의안의 모든 개별 조항을 실제 어기고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 처우는 하나의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이고르 세케

## 1. 역사적 배경 개요

2차 대전 후, 유고슬라비아는 독자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유고슬라비아는 바르샤바 조약(the Warsaw pact)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지역의 유일한 사회주의국가이기도 했지만, 코민포름(Inform-Bureau or Cominform; 공산당 정보국)의 결정사항을 공공연히 반대했다. 때문에 소비에트연방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서방세계에 손을 내밀어야만 했다. 특히 전후 초기 동안 유고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긴장감을 조성했다. 지리적으로는 나토회원국이나 바르샤바 조약가입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유고연방군은 '절대국방원칙-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면제될 수 없다'-에 기초한 독특한 군사원칙을 세웠다(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군으로 불리는 대다수의 군인들의 마음속에 이 원칙이 아직도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 국방원칙에 이런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구유고산업의 상당 부분이 군사산업이거나 관련산업이었다. 따라서 개별 공화국은 무기생산 및 개발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다.

게다가, 유고의 아이들은 '호전성'이 자랑스러운 '국민성'이라고 교육받았다. 하지만, 이 모두는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정책으로 군사화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 정책의 폐해는 불가피한 결과였다.

1980년대에 유고에 군축과 군사산업의 변화 바람이 처음으로 불었다. 이 변화의 목소리는 구 유고공화국 중 가장 진보적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몇몇 청년단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슬로베니아의 젊은이들은 모국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군축과, 병역의 도입이 국방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조차 거부했다. 동 무제의 도입이 국방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조차 거부했다. 동시에 슬로베니아 젊은이들을 분리주의자나 반사회주의자 또는 외국정보기관의 첨보원이라고 비난했다. 1991년 슬로베니아의 유고연방 탈퇴 이후, 진정한 의미의 공공근로제가 곧바로 도입되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정집대상자의 50% 이상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베니아를 따라서 크로아티아도 1992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1995년 크로아티아가 수

년간 지속된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나기까지는 법리상으로만 존재했다. 크로아티아 정집대상자 중 40% 이상이 2002년 한 해 동안 대체복무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구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아직도 법적 제도 미비로 인해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구유고슬라비아 국가들간에 일어난 전쟁기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탈영을 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 국외로 떠났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총살되었고 대부분 감옥에 가야 했다. 10년의 전쟁기간 동안 십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탈영을 선택했고, 삼십 만 이상이 동원소집을 피해 외국으로 떠났다.

## 2. 현재 상황

앞에서 밝혔듯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전면적인 도입에 실패했으며 보스니아에서는 아직도 대체복무제에 관한 이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의 경우 공통적으로 아래의 주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만 의무병역제의 범위 내로 국한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기회는 영내 비전투분야 보직이나 군사경제기관에서의 복무와 같은 방식뿐이다.
- 정집대상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병역거부 권리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NGO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다. 반면 앞서 말한 국가들의 군부는 NGO를 외국 정보기관의 지부로 여기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군대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군축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sup>11)</sup>
- '군대문제'에 대해서 민간법원은 아무런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사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군대를 위한 병역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등군사의료위원회로부터 '병역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뿐이다.

보스니아의 경우, 대체복무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집행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정집대상자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극히 소수만이 대체복무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서론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이 진행된 이유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몇몇 공동행동과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같이 벌여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의 단체들과 강한 연대캠

11) 유고슬라비아군대가 슬로베니아 젊은이들의 행동에 대해 취한 것과 같은 형태

페인을 조직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구헌법 137조와 유고슬라비아 군법 297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하고 있지만, 법 적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분야 복무로 국한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NGO 네트워크를 결성해 3만 명 서명운동을 열었다. 3만 명은 YUCOM(인권 변호사 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수정과 유고슬라비아 군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안'의 국회입법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숫자이다. 이 입법발의안은 진정한 의미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대체복무제 기간을 군과 민간 영역 모두 동등하게 두고, 군복무 12개월과 대체복무 24개월로 제정된 현 복무기간을 똑같이 7개월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이 캠페인에 참가했다. 여기에는 여성주의 단체('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이 참가하여 10개 NGO가 이후 이 캠페인에 참가하는 동기가 되었다), 보즈보디나(Vojvodina) 사회민주동맹과 같은 정치단체, 인권단체, 학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참가했다. 거리, 대학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가능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캠페인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락콘서트 같은 각종 이벤트도 개최했다. 캠페인의 주 타깃은 27세 이하 남성이었지만(27세 이전에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여성의 반응이 가장 폭발적이었으며, 특히 이를 대부분은 군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 중년 여성들로 추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미 마친 사람들은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하겠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서명운동에 거부의사를 나타나는 게 공통적이었다. 아직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복무제도의 조건보다는 복무기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방의회에서 입법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동참의원을 조직할 기회가 있었지만 캠페인 기간 동안 일반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캠페인의 목적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은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때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문 등 모든 매체의 관심을 끌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유고슬라비아군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군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전투/비전투 보직의 병역의무조건은 그대로였고 대신 병역기간은 10개월과 18개월로 줄었다. 또한 총사령관의 권한은 거의 공화국 대통령과 비슷했고, 헌병은 현행보다 더 많은 사법 권을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우리가 작성한 입법발의안이 연방의회 법무부에 제출되었다. 공식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빌의안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입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총사령부에 빌의안을 전달해서 군측의 의견을 물었다. 최종안은 일반 병역의무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비전투분야 병역의무는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역의무조건은 두 가지 모두 변동사항이 없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으며 곧 새로운 가능성의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구 유고연방이 세르

비아-몬테네그로 연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의 새 헌법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확실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목표를 정했다. 우리가 연방정부에 신청한 입법발의안에는 국내외에서 거의 백여 단체가 참여했다. 입법발의안을 작성하는데 10개월이 걸렸으며, 발의안의 마지막 문단에 헌법에 있는 '징집대상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받는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하지만, 구 유고슬라비아군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군사기관 내에서의 비전투분야 병역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캠페인에 새로운 분야를 첨가했다.

### 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의 활동영역을 대체복무제 도입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형태의 병역제도 완전거부와 전쟁세 거부와 같이 군사제도를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다른 측면도 부각시키려 애썼지만, 우리와 함께 활동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대다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복무제를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단체에서 복무할 수 없는 이유로 유고슬라비아군이 내놓은 공식답변은 매우 불공평했다. 군측은 특정 종파의 종교인만<sup>12)</sup> 민간의료기관에서 복무하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들이 환자와 의료관계자들의 개종을 종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국방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군의 해명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법에 어긋난다. 우리는 여전히 군의 설명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군은 군외부 기관에서 복무한 대체복무자를 한 명도 증인으로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료기관이나 일반 구호단체, 장애인재활기관 등 여러 공익단체의 관계자를 찾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채용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세르비아의 여러 종교단체가 참가했으며, 우리가 얻은 조사결과 인터뷰에 응한 90%의 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민간기관 대체복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 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제의를 환영했으며, 대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곧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캠페인 기간 중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적십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고슬라비아 군사령부에서 NGO라는 이유로 적십자의 제의를 거절하였음을 알아내었다.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군대 자신임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 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대중화

우리의 활동과 활동전개상황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 여성반전운동단체인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과 연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단체로서 우리는

12) 군은 동방정교회와 카톨릭,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를 특정 종파로 간주한다.

지역 유일의 양심적병역거부 소식지인 '거부!'(Prigovor!)를 발행했다. 이 소식지는 NGO 네트워크를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전역에 배부되었다.

일반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리기 위해 수 천장의 전단지와 포스터, 브로셔 및 다른 매체를 이용해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강조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했다. 양심적병역거부 운동단체로서 우리는 '위민 인 블랙'이 베오그라드 중심가에서 정기적으로 벌인 거리집회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여러 도시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대개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전쟁기간에 발생한 참사를 추도하고 전쟁범죄자들의 책임을 규탄하는 집회였거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콜롬비아와 같은 세계 전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지하는 성격의 집회였다. 국제 양심적병역거부의 날인 5월 15일과 국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차별주의 반대의 날인 11월 9일, 파시즘 패배의 날인 5월 9일,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등 여러 의미 있는 날에도 행동을 같이 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강한 국수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활동방식은 '일반시민과 연대'하는데 있어서 최선책이었다. 5월 15일 오전에 우리는 '무기가 아닌 식량'이라는 집회를 조직해서 오후에 중심가에서 시위를 했고 밤에는 락콘서트를 벌였다.

양심적병역거부운동을 지지하는 NGO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몇 회에 걸쳐 세미나와 연수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MOC-Spain, Connection e.V, 반전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국제 양심적병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양심적 병역거부 유럽사무소(EBCO)와 같은 국제 양심적병역거부 운동단체와 평화단체들의 도움이 있었다.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위민 인 블랙'은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했고(지역언론이 국제적 언론보다 훨씬 우호적이다.), 간간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레스코바크 도시의 경우,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 지원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우리는 평화캠프와 기자간담회를 조직했다. 하지만 군대변인은 우리의 행동을 '유고슬라비아군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자간담회는 여성센터에서 열렸다.

#### 4)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지원

YUCOM(인권변호사 위원회)와 인도주의 법 재단과 같은 인권단체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직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징집대상자에게는 세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 a) 비전투분야나 군사-경제기관 복무
- b) 한시적 또는 영구 면제판정을 받기 위해 병역 부적합 판정 시도
- c) 동원령 거부 후 징역형 선고

선택사항a)의 경우, 군사-경제 기관에서 13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양심적 병역거

부자에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서를 요구한다. 유니폼은 없지만, 역시 일종의 병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군대를 위한 봉사다.

선택사항b)의 경우, 의료위원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가 '병영생활에 적응이 힘들다' 또는 '일시적 신경과민증세'와 같은 이유로 '병역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병영 밖에서는 건강하지만 병영 내에 있게 되면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며, 지난 2년 간 특히 두드러졌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종의 비정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인권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사항c)의 경우, 징집대상자가 동원소집령을 거부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대개 징집거부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다. 해당 지역 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후 1~2개월 내에 다시 동원령이 발부된다. 당연히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새로운 소집명령을 받게 되고, '공식적으로' 집행유예의 조건을 파기하게 된다. 두 번째 재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첫 재판에서 선고 받은 4~6개월의 징역형뿐만 아니라 '병역법을 두 번 어긴' 죄목이 추가된다. 이들 중 일부는 동원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감옥에서 4년을 보낸다. 현재 12명의 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재판 중이거나 감옥에 있다.

우리가 병역법을 어기거나 소집령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병역거부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모든 법적 도움을 주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헌법에 따라 순수 민간단체 복무 허가를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명 있었다. 하지만 결국 군사-경제 단체로 보내졌다. 이 사람은 모든 명령을 거부했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는 출옥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났다. 아직도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세르비아의 군사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 세르비아 정교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군대는 밀접한 유대관계는 맺고 있다. 우익 종교 청년 단체들은 군대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여러 소수 종교단체들을 악마승배주의와 비교하며 활동을 막고 있다('약물, 알코올, 종파 반대 재단'이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있다). 이와 더불어 세르비아 정교와 군은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종파적 산물이며 '세르비아군대의 진정한 정교 기사도정신'에 반한다고 선전한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군대변인은 최근 '사탄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란 책을 발간했으며, 여기에서 앞서 말한 정교와 군

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 수많은 군대 및 전쟁범죄와 정치범과 관련된 준군사단체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세르비아의 국익을 전쟁 기간 동안 지켜냈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을 전범보다는 영웅으로 여긴다. 이들 중 몇몇 단체는 거의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 ▣ 때때로 1천구가 넘는 시신이 군병영이나 경찰서 근처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범인과 살해장소, 그리고 시신을 군사영토 내에 묻으라고 지시 내린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3. 전망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의 새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군법 재판소는 폐지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민간단체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사경제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사경제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복무라는 전제하에 비전투 분야의 복무와 대체복무제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소집령이 발부 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점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변론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우리의 활동사항을 인식함에 따라 군대 역시 자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대 입장에선 대체복무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징병제도 폐지로 향한 첫 단계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징병제도의 폐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캠페인 계획의 준비와 실행이라는 기조 아래 2003년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전략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는 학생단체 및 일부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EBCO가 구성한 프로젝트인 '전 유고슬라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전개를 위한 전략계획'을 통해 우리의 캠페인과 노력을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의 캠페인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금보다 용이하게 유럽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국내보다는 국외의 압력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 압력을 적절하게 결합시킨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법은 대체복무제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군재판에 대해서도 권리의 정의하고 보호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이 지역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다. 바로 여기가 모든 사회적 문제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 해결을 원하고, 새롭고, 좀 더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 12년 동안의 겪은 전쟁의 성격과 고국을 떠나는 대신 참전거

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 병역의무가 아직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전쟁중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국을 떠난다. 가부장제와 군국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종교적 거부자와 각 종교단체들에 대한 이해증가를 도울 것이며 사회전반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유호근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화의 연대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유호근입니다.

대학시절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통하여 1950년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게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길진 않지만 제 20대가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가득 차있음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도로 군사화 된 나라입니다. 남과 북을 합쳐 200만에 가까운 현역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200만 -남한 69만, 북한 105만~117만- 에 가까운 현역병력<sup>13)</sup>에 예비병력만 1000만 -남한 304만<sup>14)</sup>, 여명, 북한 748만 여명<sup>15)</sup> 등- 이 넘는 등 한반도 남성의 3명 중 1명 가량이 군인(혹은 예비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토를 가진 나라들의 병력과 비교하면 10배에 가까운 수치이며(일본 24만, 영국 22만, 독일 22만, 프랑스 29만, 이스라엘 17만 등) 세계최강대국이라는 미국(140만)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군사화 되어있는 사회적 현실은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명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군인정서가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군사화 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영화 된 사회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으로 치부되어 왔고,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러하듯 ‘국군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분단보다는 통일을 우선시하는 가치관과 신념이 내 안에 자리잡아가면서 현실과 신념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성은 군대를 가야만 하는 현실’과 ‘동포에게-더 나아가 인간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신념’간의 충돌은 심히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고민 끝에 신념의 길을 선택하고 병역거부자의 길로 들어서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한국사회에 1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을 살았으며 이들 중에는 집총거부라는 동일사안으로 3차례에 걸쳐 10년을 복역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1400여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13)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2001.10월)

14)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5)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요원 포함

저 역시 구속 수감되었다가 현행 병역법이 위헌소송이 청구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연기되고 보석으로 출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보내졌음에도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으며 단지 경멸하고 심지어 그들을 ‘사회로부터 일탈된 사람들’정도로 치부해 왔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총을 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해온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로 동일한 위치에 세워진 지금 저는 과거 가해자에서 현재 피해자로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깊은 성찰의 과정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 변화된 상황과 의의

2001년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그동안 묻혀져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병역거부자들에게 맞춰진 초점은 ‘양심’과 ‘인권’의 문제보다는 ‘동정’과 ‘연민’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 이후 병역거부가 특정종교만의 문제가 아님이 상기되며 ‘병역거부’와 ‘양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2년 저를 포함한 비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양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군사독재를 경험하며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해왔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거나 수십 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장기수만 해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에서 ‘종교적·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양심’은 선함과 착함 정도로 ‘축소정의’되었으며 법을 잘 지키는 정도가 양심으로 치부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편 개념적 편향은 진보적 인사를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진보의 영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등의 병역거부자들에게 양심수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수감 이유가 ‘비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조건들 속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쓰이며 타인의 양심에 관대하기보다는 자신의의 양심에만 주목한 이중성이 존재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용, ‘폴레랑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 둘째, 평화와 인권의 본연의 가치의 회복에 기여합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서의 길었던 군사독재는 저항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평화와 인권의 문제를 특정 이슈의 하위개념으로 상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편으로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저항폭력에 관대한 의식은 다른 한편으로 자기합리화와 사고와 실천의 모순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폭력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비교적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 상황으로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평화와 인권을 우선에 놓는 가치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른 이슈와 특정사안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고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을 가장 우선에 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억압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며 고통을 받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일상의 폭력, 일상 속의 파시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한국사회는 폭력에 관대하고 심지어 무기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의 억압의 문화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를 확대하는 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비군사화'화를 통한 합리적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만 하는 현실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사회를 군대처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상명하달, 권위주의, 구타 등의 만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및 조직의 운영보다는 보스 중심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일반화 시켜왔습니다. 역으로 이는 군사독재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군사화 된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남한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의 20-30%를 국방비로 지출해 왔으며 북한은 경제력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이 더욱 심각합니다. 왜곡된 경제구조를 정상화시킴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분배구조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내 비민주적 구조의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국방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군대개선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군대는 구타, 의문사, 노동력의 낭비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의 등장과 더 나아가 대체복무의 도입은 - 군사력의 강화와는 별개로 - 군대내 인권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문제는 사회에 제기된 지 3년이 채 안되지만 매우 넓고 깊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5%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조사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병의 당사자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의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고

3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 역시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라크전 반대 가두 캠페인, 학습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다름에 대한 관용, 다르지 않음에 대한 자각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 전체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경험이 부족했던 이유와 군대 생활에서 겪었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에 대한 보상심리 등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다수가 소수에게 견지해야 할 입장임과 동시에 소수 역시 다수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더 나아가 다르지 않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세상에 나만이 가장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다른 나'로 바라보면 세상에는 온통 나밖에 없으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대립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진지한 모습과 목소리들의 진정성을 구현함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들의 신념이 진실 되고, 그 실천이 정당하며, 발걸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기에 머지 않은 장래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새시대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와 인권을 향해 전진합시다!

##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안드레아스 스펙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며, 확실한 것은 징병제도 혹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징집 못지 않게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첼 브렛(Rachel Brett)이 내일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예정이고, 저 자신 또한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이곳 서울에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반전 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던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18조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지만 말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 15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재 이 나라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 20년 전인 1983년, 제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서유럽에는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또한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독일 군대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것은 일반적으로 군사주의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새로이 불붙기 시작한 동서 군비경쟁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병역을 거부한 후에도 여전히 '병역거부사안 심사위원회'에 출두해,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옹호해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는 저의 신청서를 기각한 심사위원회 앞에서 말입니다<sup>16)</sup>. 오로지 이렇게 호소를

16) [역자주] 독일의 병역거부사안 심사위원회는 독일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병역거부 신청이 양심적 결정에 입각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는 경우에 신청자를 병역거부자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하고 있는 동안에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사주의와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군대와 대체복무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결심했던 완전거부(Total Objection)를 징병제도와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행위로 바라보았으며, 독일 군대 - 혹은 어느 나라의 군대<sup>17)</sup>이건 - 를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징병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의 문제였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계으른 꿈과 싸우거나 평화주의에 대해 단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행동하는 것 -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이들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의무인 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부도덕성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낡아빠지고 야만스러운 관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 그리고 노예의 족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시도된 바 있으며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복무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커다란 개인적 희생과 고난이 따를 지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 전쟁과 관련한 모든 복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sup>18)</sup>

1970년대 초, 당시 반전 인터내셔널의 평의회 멤버였던, 피에트로 핀나(Pietro Pinna)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초점은 반군사주의적 행동에 맞추어져 있다. 그 신념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경험들은 논쟁과 대중적 결집의 중심적 축으로 기능한다. 좀 더 포괄적인 혁명적 전략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근본적인 지향점을 제시한다. 즉 그것은 책임감,

나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서류로부터 양심적 결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 청문을 개최한다. 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청문을 거쳐야 한다

17) Andreas Speck: Sich fügen heisst lügen. Die Geschichte einer totalen Kriegsdienstverweigerung. *Schriften der Erich Mühsam Gesellschaft*. Heft 10. Lübeck: Erich-Mühsam-Gesellschaft 1995.

18) Albert Einstein, *The War Resister No XXVIII*, spring 1931, page 2

자율 그리고 개인의 자발성과 같은 것들이며, 이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을 사회적 삶의 다른 부분들로 확장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sup>19)</sup>

한 마디로 양심적 병역거부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반군사주의적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개인의 행위이며, 이는 집단의 일부로서 개인이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무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인권적 접근은 이 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탈군사주의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개인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는 적절한 곳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멀리 내다 보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인권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 부분적 성공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1921년 반전인터내셔널이 설립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덴마크와 스웨덴 단 두 나라에 불과했지만, 곧이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반전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1998년 세계 징집 조사’에는 177개 나라들의 징집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96개 나라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참고). 이들 중 30개 국가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림 2 참고) 비록 이런 상황이 1921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 또한 많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66개 나라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Conscription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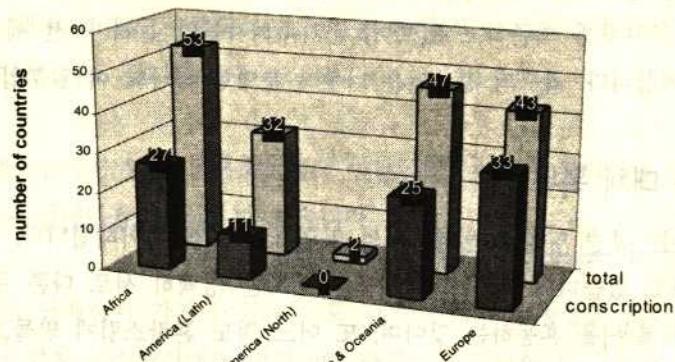


그림 1 세계의 징병제도 현황 출처 WRI 1998 world survey, 2003년 업데이트

Conscientious objection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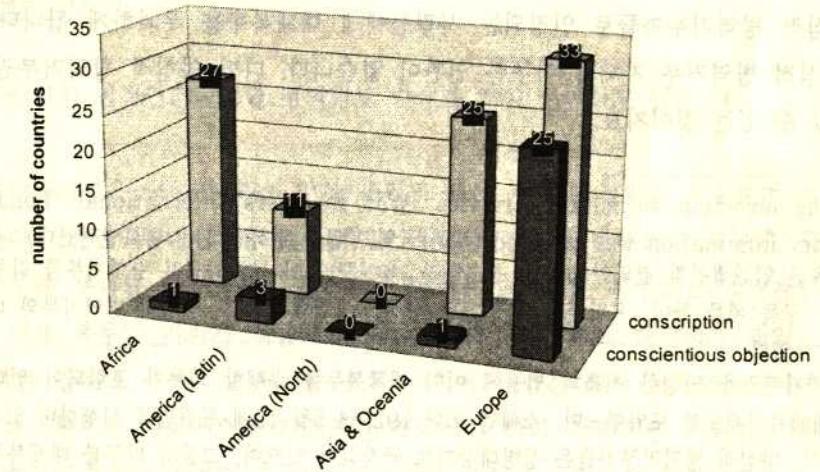


그림 2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출처 WRI 1998 world survey, 2003년 업데이트

우리는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유럽권의 상황은 매우 나빠 보입니다. 위의 통계는 소위 지원병제 혹은 직업군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가 포함될 경우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원병 혹은 직업군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단지 몇나라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sup>20)</sup>

19) Pietro Pinna: Functions and policy of WRI. *War Resistance* Vol 3, 1st & 2nd quarters 1973

20) Bart Horeman&Mark Stolwijk: Refusing to bear arms. A world survey of conscription and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다른 측면들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 혹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굳이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사주의자들의 논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최근의 걸프전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예 일뿐입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

불행하게도, 대체복무는 종종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연스런 귀결로 이해됩니다. 저는 지금 “불행하게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는 명백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안을 혼동하는 것이며, 또 어느 정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함께 이야기합니다. 유엔 역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sup>21)</sup>

간단히 말해 양심적 병역거부란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의 뜻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부과하게 됩니다<sup>22)</sup> 그러나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됨에 따른 결과일 수 있는 것이지요.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London, 1998. Some country information was updated.(부분 국역, 『월간 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21)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45 등 참고하라. 유엔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예를 들어, 유럽의회,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22)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최초의 법률에 이미 대체복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덴마크는 1917년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으며, 스웨덴 또한 1920년 5월 12에 관련법을 시행한바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병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들의 의무를 대체복무를 통해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거부해왔다.Wilfred Wellock: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Bulletin No II, November 1923, page 2-4 참고.

반전인터내셔널은 평화 양심수 명단\*(Prisoners for Peace Honour Roll)에 대체복무를 수행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에만 이들을 평화 양심수 명단에서 누락되시킨 바 있다.

Bart Horeman: History of the Prisoners for Peace list, The Broken Rifle No 53, November 2001, page 8. Bernard Withers: The Case for Absolutism, The War Resister No 68, June 1955, page 3-722도 참고할 것.

\*[역자주] 반전 인터내셔널은 1956년부터 12월1일을 ‘평화 양심수의 날’(Prisoners for Peace Day)로 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해마다 이날에 맞춰 반전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평화 양심수의 명단을 발표한다. 초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명단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최근에는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구속된 평화운동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작년부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이 명단에 수록되고 있다.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은 아마 조직화된 병역거부 운동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룹은 엄격하게 대체 복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그룹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925년 호데스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반전인터내셔널은 결의안을 통해 대체 복무제도가 안고 있는 두가지 딜레마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회의는 가입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견해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대체 복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서는, 대체 복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전인터내셔널은 이러한 국가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전시에 주행되는 대체 복무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수행되는 모든 대체 복무는 전쟁체계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23)</sup>

1967년에 열린 반전인터내셔널 평의회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은 군사적 혹은 민간 목적의 모든 징집과 징발을 거부하며 이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반전인터내셔널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징병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징병에 대한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들에서 대체 복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지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대체복무는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기관의 지원 하에서 국제적 봉사와 평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sup>24)</sup>“

반전인터내셔널은 민간대체복무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1. 국가에게 자국 시민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

23) 대체복무에 대한 반전인터내셔널의 입장에 대해서는 The W.R.I. view of alternative services. The War Resister No XIII, July 1926, page 4. 참고. 같은 호에 당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던 대체복무법안에 대한 개요가 실려있다.

24) War Resistance Vol 2, 3rd quarter 1967, No 22, page 5 참고/

2. 대체복무의 내용이 오로지 민간성격의 것<sup>25)</sup>이라 할지라도 전시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반전인터넷내셔널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전인터넷내셔널이 군사적 성격과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모두를 완전히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어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투옥되는 상황보다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의 상황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확실히 반전인터넷내셔널이 조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룹의 활동기반이 유럽이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의 결과일 수 있겠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조직화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군사 독재가 종식되었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부터 서서히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우 작은 수의 그룹들만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조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매우 새로운 개념입니다. 물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왔던 사람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있었고, 현재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의 대부분도 바로 이들입니다. 이 나라에도 약 1500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운동을 조직해 보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 운동 없이 변화란 거의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 대부분에서 인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프리카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 정도만이 징집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징집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여전히 군대를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신병을 모집할 지 모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전쟁을 겪었으며 아직까지 전쟁중이거나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고문을 당하거나 장기간의 투옥 혹은 심지어는 즉결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징집원들을 피하기 위한 다른 여러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조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위한 한가지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25) 이와 관련해 독일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전쟁시,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컨대 병원, 민방위, 지뢰제거, 난민통제와 같은 대체복무에 무기한 소집할 수 있다. 독일 연방민간복무청장은 1980년대에 이를 분명히 명시했다.

시민사회의 존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종 양심적 병역거부는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어 집니다. 이것 역시 왜 조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유럽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훨씬 약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1: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우리, 반전인터내셔널은 인간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같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도록 만들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된 것은 올해 1월 말 영국 외무부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영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영국 외무부 대표는 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일반적으로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처음에 제시한 통계 자료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953년 그때 당시 반전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이었던 헤롤드 빙(Harold Bing)은 인권적 차원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한 어떠한 국제 협정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만족스러운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현재에도 개인 또는 민간기구들이 여지껏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왔던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sup>26)</sup>." 그래서 반전인터내셔널은 그 당시 논의되고 있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sup>27)</sup> 1968년 반전인터내셔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40,000명 이상의 서명자를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1970년 1월 30일 유엔에 전달되었으며 "유엔 묘지<sup>28)</sup>"라 불리는 문서저장고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그 때 보낸 서명서와 호소문들이 아직까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여전히 국제 규약 혹은 추가의정서에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어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26) Harold F. Bing: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The War Resister* No 63, autumn 1953, page 9-15

2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1966년 12월 23일에 채택되었으며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 규약이 발효된 시점은 이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76년 3월 23일이다.

28) Eileen Egan: Conscientious objection stalled in Human Rights Commission. War Resistance Vol 3, 3rd quarter, 1973

규약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습니다. 최근 2002년에도 유엔 인권 위원회는 결의안 45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sup>29)</sup> 이들 결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언제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 이는 이미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 또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징집과정중의 어떤 특별한 시점에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청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병역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에게 제공되어야 함 -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아니라 요청이 없을 때도 국가 기관에 의해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 및 복무조건과 관련한 차별의 금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의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혹은 좋게 말해서 매우 문제가 많은 몇 가지 규범들 또한 결의안들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들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 반전인터내셔널은 "구체적인 상황별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공명정대할지라도 어떤 기관이 누군가의 양심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항상 매우 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은 엄격한 심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항상 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다만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대체복무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란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는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를 의미하는 징병제도로부터 파생된, 이 의무를 관철시키는 또 다른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9) 유엔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결의안들은 1998년 77호 결의안, 2000년 34호 결의안, 2002년 45호 결의안이다.

물론 유엔 수준의 결의안들은 홀륭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인권법의 전체 시스템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아무런 강제적 시행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제 인권법을 무시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 때에는 어느 정도로 더 많은 결의안들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의 친구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유엔 결의안들은 우리들의 정치적 투쟁에 있어서 만큼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우리더러 종교 분파나 급진주의자들의 미친 무리라고 비난하는 정부 대표자들 앞에서 그것을 훈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급진주의자 - 저는 확실히 급진적인 평화주의자이며 비폭력적 무정부주의자이며 반군사주의자입니다.-라고 불리는 것을 거리지 않습니다만 유엔을 활용해 우리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 또한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을 강조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범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조차 거의 충족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가 첫 징집 영장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의 없는 일이죠. 유엔인권위원회의 1998년 77호 결의안을 근거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 시스템과 함께 해야만 하는 동안 - 반전인터내셔널은 종종 제네바 웨이커 유엔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인권 담론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유엔이 가끔씩 유용한 도구이며 가끔은 보호장치라고 보아야 하지만 결코 그들의 논리를 따르서는 안 됩니다.

## 과제 II: 양심적 병역거부와 반전

제게 중요한 것은 풀뿌리 차원의 대응,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반전 사이의 연관이라는 문제입니다. 1967년 반전인터내셔널 평의회와 집행부 멤버이자 "반전인터내셔널 1968년 세계 징집 조사"<sup>30)</sup>의 공동 저자인 토니 스마이테(Tony Smythe)는 "비록 반전인터내셔널의 중심 목표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알고 보면 오늘 날<sup>31)</sup>의 반전 투쟁과 크게 무관합니다."라는 자극적인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많은 성과들을 묘사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 Devi Prasad and Tony Smythe (ed): Conscription. A world survey.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resistance to it. War Resisters' International, London, 1968

31) Tony Smy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War Resistance Vol 2, 2nd quarter, 1967, No 21, page 17-22

"비록 성과들의 목표는 늘어났지만,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목하는 목표들, 예컨대, 징병제도의 소멸, 전쟁에 대한 대중적 저항,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혁명과 같은 목표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멀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입안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5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토니 스마이테의 말을 다시 살펴보건대, 과연 우리는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목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분명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피에르토 핀나로 돌아가보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초점은 반군사주의적 행동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논쟁과 대중적 결집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위해 싸울 때조차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명확한 목표는 징병제도 혹은 모든 형태의 강제징집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스페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채택한 접근방법이었습니다<sup>32)</sup> 하지만 이 운동의 결과는 불가피하게도 직업적 군대였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경우 반군사주의 운동이 스페인 군대가 충분한 숫자의 자원자를 모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근래에도 여전히, 징병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종종 군현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같을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sup>33)</sup> 단지 그들만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징병제 폐지만 가지고서 만족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징병제 폐지가 군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또 한 걸음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일부로 만들고 다른 반전 단체들과 연대를 건설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상으

32) Rafa Ajangiz: Civil disobedience gets rid of conscription (Spain, 1985-2000).

33) 형가리에 있는 반전인터내셔널의 유관단체 알바 코어(Alba Kör)는 현재 형가리 징병제반대연맹을 지지할 것인지를 두고 어려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형가리 징병제반대연맹은 반군사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형가리 군대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형가리 군현대화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다. 확실히 성공(?)은 있는 듯이 보인다. 2003년 2월 14일 형가리 정부는 2005년까지 징병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Farkas Henrik: Email 18 February 2003)

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해 인권단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혹은 반전인터내셔널로서 우리는 인권적 접근과 전쟁에 반대하는 반군사주의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접근방법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장은 인권에 관한 것이 라기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변화란 군사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리고 협동과 비폭력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지금과 같은 시기, 다시 말해 여전히 헤게모니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793년 프랑스가 징병제도를 채택한 이래, 반드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발칸 전쟁때의 상황만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병역기피자들과 탈영병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같은 사람들의 통계는 전체의 50%를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반전인터내셔널과 국제사면위원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999년 나토의 유고공습 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 약 15,000여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하거나 탈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 발견하는 것조차 매우 힘이 든 상황입니다.

터키의 경우, 현재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은 약 5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는 400,00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군부는 예비군들이 동원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매년 30,000명<sup>34)</sup>의 남성과 여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02년에는 2,600명이 그리고 2001년에는 1,500명이, 즉 2년 동안 4,100에 이르는 사람들이 탈영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sup>35)</sup>.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반전인터내셔널 이스라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규모는 약 180명 앞에서 든 예보다 훨씬 긴 기간임에도 그 숫자는 적습니다<sup>36)</sup>.

러시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니치니 노프고로드시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보다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매년 3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입영통지서를 무시하고 징병절차<sup>37)</sup>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

34) Sergey Sandler: Statistics. Email 10 November 2002

35) Conal Urquhart: Israeli army desertions rise. The Guardian, 19 November 2002

36) War Resisters'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Israel: an unrecognised human right. Report for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relation to Article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London, 3 February 2003

37) Conal Urquhart: Israeli army desertions rise. The Guardian, 19 November 2002

황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전인터내셔널과 국제사면위원회가 다뤘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안도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sup>38)</sup>.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무엇일까요? 35년 전 토니 스마이테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장차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에 저항하는데 있어 별반 상관이 없는 것"<sup>39)</sup>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든, 그렇지 않은 간에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인 세르게이 샌들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자면, 그 규모라는 차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중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행동은 군대와 관련된 그럴듯한 동의(공적기관으로서 군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행동이거나 이스라엘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적 정책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은, 군대 및 정부의 장성들이 내리는 결정에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sup>40)</sup>"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바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르게이 샌들러를 인용하자면, 그들이 "메시지를 크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회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군대에서 이탈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되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 나아가 대부분의 군대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군대는 어느 정도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군대는 병역기피라는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조차 합니다. 왜나하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군대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혹은 공개적으로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현재 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욱 강하게 억압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차후의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조직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다음 과제를 이야기해봅시다.

38) Human Rights Watch: Conscription through detention in Russia's Armed Forces, New York, November 2002

39) Tony Smy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War Resistance* Vol 2, 2nd quarter, No 21, page 17-22

40) Sergei Sandler: Delivering the message, loud and clear. *The Broken Rifle* No 53, November 2001.

### 과제 III: 정치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운동 조직하기

운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항상 힘이 든 일입니다. 미국의 운동가인 빌 모이어는 어떠한 사회 운동이건 그 주요한 임무는 "가슴(공감)과 이성(여론) 그리고 다수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권력자와 투쟁하는 것"에 있다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sup>41)</sup>.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의 집단적 운동으로서 우리 자신의 힘을 건설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역능을 배양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아직 집단적 운동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다만 소규모 그룹들과 개인들만 관여하고 있는 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선언하는 사람들은 투옥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의 역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지그룹들, 상담, 그리고 민주적인 혹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비폭력 훈련 - 더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하는 훈련까지 포함해서 -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sup>42)</sup> 또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추구하며 군대의 지배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에는 상당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사람들이 감옥으로 투옥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과정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토니 스마이테는 제1차 세계 대전시기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영국인들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지 못했던 6,242명 중에서 4,000명은 형법에 따라 감옥 바깥에서 노동을 했으며 1,500명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이 중 900명은 2년 이상을 선고 받았으며 10명이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 중 31명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34명은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하지만 뒤에 수상직권으로 형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의 소름끼치는 여건으로 인해 그들의 남은 여생을 장애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sup>43)</sup>" 물론 감옥살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우리가 그것을 고무했다는 이유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정신병자가 되고, 혹은 여생을 장애로 고통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또한 원하지

41) Bill Moyer: Movement Action Plan. A Strategical Framework Describing the Eight Stages of Successful Social Movements. Social Movement Empowerment Project, San Francisco, 1987

42) Julia Kraft and Andreas Speck. Nonviolence and Social Empowerment. London/Oldenbourg, 2000.

43) Tony Smythe: Conscientious objection and war resistance. *War Resistance* Vol 2, 2nd quarter, No 21, page 17-22

않습니다.

독일에서 완전거부를 행했던 저의 경험덕분에, 저는 누군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되고자 할 때, 그런 생각을 거스르면서 조언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나 순교자를 필요로 하거나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며, 역할을 배양해 가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힘있는 운동을 원합니다. 물론 지원단체들과 국제적 연대가 감옥에서의 삶을 안전하고 좀더 어렵지 않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감옥에서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옥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아직 감옥에서의 삶을 이겨낼 만한 의지를 갖추지 못한 우리 - 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상담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군복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혹은 준법적인 방도들에 대해 조언하는 것 또한 우리의 투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소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우 치毓적이며 힘을 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러한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지원과 상담이 도움을 주고 있는 한, 분명 다른 사람들은 더 적합한 방식으로 군복무를 거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체계와 대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말로 곡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운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지지그룹들이 운동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한명에 불과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느때건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입니다. 이제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전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특히 징병대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공감)과 이성(여론)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과제이며, 오늘 오후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전설해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를 믿어야 할까요?*

### 글을 마치며

이 글을 마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새로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운동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며 이 운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의가 운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인권적 접근과 전쟁에 저항하는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다면 꽤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지금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각점 - 상황에 맞는 결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토론에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운동기대에 있는 우리에게] 연결줄 풀리는*

- 암울로ւ CO 인정 반기위는 현재 당위 - 대체복무제로 요구
- 비례로ւ 기록에 암암 푸였.
- 군사의 그 자체 인정에 반하는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전략

제임스 라일리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흥미로운 회의,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슈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기연씨와 최정민씨를 비롯해 이번 행사를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모든 회의 조직자분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개의 이어지는 논점들을 던지는 방식으로 기초발제를 한 후, 이후의 그룹토론을 위해 플로어에 발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를 비롯해 회의기간 내내 유용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국이 두 주제를 최근에 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발제를 진행 해보려 합니다. 제가 제안할 논점들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개념들, 운동의 동학, 전략, 그리고 전술이 그것입니다.

## 개념

“모든 백성들의 의무는 왕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백성의 영혼은 그 자신의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5

시민적 의무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정부 형태가 들어선 이래 계속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에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거부의의 근거(세속적 혹은 종교적)에 따라, 거부의의 범위에 따라(모든 전쟁에 반대하는지, 특별한 분쟁에 대해 반대하는지, 또는 단지 특별한 무기만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복무에 대한 의지(모든 의무를 거부할 것인지, 시민으로서 의무는 수행할 것인지, 군대에서 비전투 분야에 복무할 것인지)에 따라.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이러한 유형들을 모두 채택해야 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포괄 할 수 있는 경계입니까? 근본적으로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누구이며, 누가 그 그것을 결정합니까?

2) 한국에서 시민권에 대한 많은 기본적인 관념들은 군복무라는 전통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운동을 건설하고 대중적 지지와 이해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봉사, 애국심, 그리고 국가안보의 보증이라는 논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어떠한 논리로 답할 수 있습니까?

3) 지난 10년 동안,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또한 인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더욱 완성된 민주주의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지형은 새로운 동맹들을 확보함에 있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최근의 성공사례와 실패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운동 정책들

1) 사회 운동들은 내적인 단결을 유지하는 것과 폭넓은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항상 대면하기 마련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있어 우선적으로 평화운동과 종교단체들 사이에 잠재적으로 놓여있는 격차를 좁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과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진보적 기독교 그룹들과 어떻게 연관을 맺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도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략

1) 언제, 또 어떻게 정책적인 타협을 타협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체복무기간이나 복무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시스템의 운영, 그리고 정부와 NGO들 사이의 적절한 협조 등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타협이 필요할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운동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함에 있어 이런 타협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야기할까요?

2)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남한의 대북정책이라는 사안에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고, 또 연관시켜야 합니까? 두 이슈, 즉 국가 안보 정책과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을 연결짓는 것은 유리하고 적절한 것입니까?

## 전술들

1) 아직 대부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룹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연대세력입니까? 병역으로부터 고통 받는 개인들의 가족들은 이점과 관련해 어떻습니까?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군복무 이전, 군복무기간 동안에, 그리고 복무를 마친 잠재적 병역거부자들과 교통함에 있어 상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3)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집중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법안통과를 위한 효과적인 전술들은 무엇이며, 국제적인 조직들과 국제적 압력은 어떻게 이 운동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역사

레이첼 브렛

### 들어가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길고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퀘이커는 살인하는 행위나 살인을 훈련받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믿으며 300년이 넘도록 참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념에 기초하여 퀴커가 병역거부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화주의 신념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퀴커는 이로 인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체할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퀴커는 제네바와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유엔의 강력한 후원자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퀴커는 조정, 협상,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포함,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퀴커는 또 참전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감소시키는 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정부는 퀴커이자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이를 국방부 차관(Deputy Minister of Defence)에 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정부가 국방의 의미가 곧 군사력의 사용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평화주의자들은 자국에 깊이 헌신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복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민간복무제(civilian service)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복무제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요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제도입니다.

### 규범들

양심적 병역거부는 수십 년 동안 몇몇 나라들에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하여 국제법상에서 병역거부권이 승인된 것은 좀더 최근의 일입니다. 이 권리는 국제적 혹은 종교적 인권조약 그 어디에도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9년 유엔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sup>44)</sup>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의해 1993년부터 병역거부권이 동규약에서 도출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어 왔습니다.<sup>45)</sup>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국가적 비상시기라 할지라도 절대적이고 훼손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sup>46)</sup> 비록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지만, 개인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권리가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은 “오직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중보건, 미풍양속 또는 기본권과 타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 일 뿐이며<sup>47)</sup>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인권 규정들과는 달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인 병역거부권은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확장되어 왔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종교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유신론, 무신론, 무신론적 신앙을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또 병역거부의 양심을 오직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명백히 하였습니다.<sup>48)</sup>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적 혹은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확고한 신념을 포함하여 양심의 원칙과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sup>49)</sup>

44) UN 인권위 1989/59 결의, 1993/84, 1995/83, 1998/77, 2000/34 그리고 2002/45의 잇따른 결의에서 보강되고 발전되었다.

45) 인권이사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2(48)호는 동 규약 하의 국가보고에 대한 후속 질문들과 동 규약 제1선택의정서(Fist Optional Protocol to the Covenant) 하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고려를 통해 이를 계승·발전시켰다. 어떠한 종교적 인권재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회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권고 8(1987)호에서는 의회 회원국들에게 “양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2000년 12월 선포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10(2)조를 통해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권에 포함된 권리로 이를 명시하였다. 유사하게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군복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 국가들의 법 제도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를 초청했다(7장-미주인권위원회 권고, 1997년 연례보고서, 제98차 회의).

46)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8조 1항.

4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3항.

48)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2001년 11월 12일 CCPR/CO/73/UKR, 20항)와 카자흐스탄(2000년 7월 24일 CCPR/CO/67/KGZ, 189항)에 관한 인권이사회 최종 소견을 보라.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무력의 사용이 어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정당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부분적 병역거부)”도 포함합니다.<sup>50)</sup> 단지 전쟁의 개념적인 면에서 예를 들자면 “선택적” 또는 “부분적” 병역거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반논평 22호가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양심의 자유 및 개인의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심각하게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sup>51)</sup>,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만 병역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특별히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 실효성

양심적 병역거부가 승인된 국가에서도 이 승인은 실질적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인 것입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반드시 법조문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법은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그 법의 유용성과 활용방법은 관련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3. 신병모집 절차에서 병역거부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병역거부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가와 같은 절차는 국제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5. 병역거부 인정의 근거가 국제법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6. 병역거부는 신병뿐만 아니라 현역병이나 예비역도 가능해야 한다. 강제제(강제적 혹은 의무적 군복무) 하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점이 종종 제기되기도 하지만, 심지어 군입대의 최초 결정이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적 군복무가 처음 수용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sup>52)</sup>
7. 대체복무의 종류, 조건 그리고 기간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sup>53)</sup> 그리고

49)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77호 결의안. 동시에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는 어떤 종교나 신앙에도 귀속되지 않을 권리 뿐 아니라 유신론, 무신론 그리고 무신론적 신앙들도 보장하고 있다. 신앙 혹은 종교의 의미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2절)고 명백히 하고 있다.

50) 유엔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by Eide and Mubanga-Chipoya (뉴욕, 1983)

51) 11절

52)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77호 결의안은 “군복무 중인 사람도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병역거부의 제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호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종교 혹은 신앙 선택의 자유를 명백하게 승인했다.

53)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77호 결의안 4항, “강제적 병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병역거부자를 위한 별다른 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않은 각 국은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비무장복무 혹은 민간적이며 징벌적이지 않는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8. 대체복무 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차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sup>54)</sup>

## 대체복무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는 병역거부의 자유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기의 사용만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비무장 복무, 모든 군사력의 사용,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민간행정국 하의 민간복무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대체 복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up>55)</sup> 모든 병역거부자들이 항상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거부자들 혹은 그들의 일부는 군복무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복무의 종류, 기간 등이 처벌적인 대체복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비교적 긴 기간”<sup>56)</sup> 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기간의 차이는 오직 그것이 “특별 봉사로 고려되는 것”이나 그 대체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는 기간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할 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sup>57)</sup>

##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사람의 병역거부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예를 들어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군대와 대체복무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결해 왔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채택이 되었다면, 그것은 국내적 혹은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에서 병역거부 행동이 진실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정한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을” “독립적이고 공평한” 기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sup>58)</sup>

## 결론

국제적, 종교적, 국가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형별(종종 반복되는 투옥)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나, 가장 기본적인 신념이나 원칙을 침해받고 있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합니다. 동참을 거부하며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

54)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55) 예를 들어 유럽의회 각료위원회의 1987년 8호 권고를 보라.

56) 1987년 유럽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8호.

57) 인권이사회는 프랑스의 Foin사건, 청원(Communication) No. 666/1995 (CCPR/C/67/D)을 1999

년 11월 3일 결정하였고, 비슷하게 프랑스의 Venier and Nicolas 사건, 청원 No. 690/1996, No.

91/1996, 그리고 프랑스의 Maille 사건 청원 No. 689/1996, 이들 모든 사건을 2000년 7월 10일 결정하였다.

58) 1998/77 UN 인권위원회 결의 3항.

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과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주장인 것입니다.

# 국제 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대체 복무제도의 시행<sup>59)</sup>

루씨에 비에르스마

이 보고서의 목적은 (1)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들 내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논점에 관한 역사적 전전 상황을 보여주는 것; (2) 국제 연합에 의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위한 법적 기초를 다지는 것; (3)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관련 법제에 대한 인식과 개별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들이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특별 진행 기구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등으로 인권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1부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그리고 '총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2부는 인권이사회가 일반논평을 통한 법제와 권고를 포함하여 이 안건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제3부는 인권 위원회의 특별 절차 기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원칙에 반하는 정부의 관행과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기술한다.

1989년의 결의문에서 인권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인 인정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30년 이상 국제 연합의 의제에 올라와 있었다.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 제18조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UDHR) 제18조에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확증한다: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의 신앙과 종교를 바꿀 자유, 혼자서든 혹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로든 가르치고, 실천하고, 승배하고, 규칙을 지키는 일로써 그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ICCPY 제18조에 의하면,

59) 이 보고서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견해를 대표하지 아니함.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그의 선택대로 신앙과 종교를 갖거나 수용할 자유, 개인으로든 혹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로든 승배하고, 규칙을 지키고, 실천하고, 가르침으로써 그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아무도 그의 선택에 따라 신앙과 종교를 갖거나 수용할 자유를 손상시키는 강요 아래 있지 않다.

3. 자신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자유는 법이 규정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 도덕이나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제한된다.

4. 규약 당사국은 부모 및 적용가능시 법적인 보호자가 그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 도덕적으로 교육할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명, 자유, 개인의 안전, 교육,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 제1부 국제 연합 내에서의 역사적 전진들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 그 외의 실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년의 교육과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는 맥락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결의문과 일치하게, 1973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sup>60)</sup>

1976년 2월 11일 결의문 1 A (XXX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했고, 다음 회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60) E/CN.4/1118와 Corr.1 와 Add.1-3.

1978년 12월 20일 결의문 33/165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주요 심의 기구인 총회는 모든 사람들이 흑인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경찰이나 군대의 복무를 거절할 권리를 인정하였고,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의 정신과 일치하게, 군이나 경찰에 복무함으로써 흑인차별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원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원국들이 망명이나 다른 국가로의 안전한 통과를 허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문은 국제 사회가 무력의 사용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가장 명확하게 승인한 것이었다.<sup>61)</sup>

이어서 1980년 3월 12일 결의문 38(XXXVI)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과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그 건에 관하여 전달할 만한 어떤 주석이라도 함께, 회원국들로부터 다시 한 번 입수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1981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sup>62)</sup>

1981년 3월 12일 결의문 40(XXXVII)에서 위원회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1978년 12월 20일의 총회 결의문 이행에 대해서 위원회에 권고할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1981년 9월 10일 결의문 14(XXXIV)에서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주요 보조 조직체인 소위원회는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다양한 범위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여 그들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간결한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1982년에 소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예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1982년 9월 10일 결의문 1982/30에서 소위원회는 전문가들에게 예비 보고서에서 수집한 언급에 기초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된 원칙들을 개발하도록 요청했다.

1983년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는 다양한 인권 문서들에 표현되는 관련 국제 용어와 표준을 반영하고, 군복무의 자발적 혹은 의무적 이행과 관련된 국가적 관행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했다.<sup>63)</sup> 그 연구는 특히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혹은 유사한 동기에서 유발한 깊은 신념의 양심적 이유로 무장 복무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을 권리를 회원국들이 법을 통해 인정하도록 총회가 권고하도록 요구 했다.<sup>64)</sup> 대체 복무와 관련하여, 총회는 회원국들이 거부자들에게 적어도 군복무 기간만큼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될 정도로 너무 길지 않게 대체 복무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 봉사나 평화, 발전,

61 양심적 병역 거부, Asbjorn Eide와 Chama Mubanga-Chipoya, 유엔 출판, 판매 번호 E.85.XIV.1.

68단락

62 E/CN.4/1419 와 Add. 1-5. 또한 E/CN.4/1509 참조.

63 양심적 병역 거부, Asbjorn Eide와 Chama Mubanga-Chipoya, 유엔 출판, 판매 번호 E.85.XIV.1.

64 Ibid., para. 153 (1). (a).

국제적 이해를 위한 일을 포함하여 의미있는 내용의 대체 복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까지 노력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받았다.<sup>65)</sup>

1984년 3월 12일 결의문 1984/33에서 위원회는 정부들, 관련 유엔 기구들과 특별 기관, 다른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논평을 받을 목적으로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이 작성한 보고서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1985년에 사무총장은 이 연구에 대한 정부, 유엔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의 논평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했다.<sup>66)</sup>

1987년 3월 10일 결의문 1987/46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정하도록 회원국들에게 호소하고 이 권리를 실천하는 개인을 투옥시키지 말도록 권고했다.

의미심장하게도, 1989년 3월 8일 결의문 1989/59에서 인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 결의문은 또한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고 그런 조항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이 점과 관련한 몇몇 회원국들의 경험을 유념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그 사유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투옥시키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했다. 그 결의문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형태의 대체 복무제가 원칙적으로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띠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1991년 3월 6일 결의문 1991/65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1993년의 제49차 회기에서 그 건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청년의 역할'이라는 회의 안건 하에 제49차 회기에서 그 질문을 보다 깊이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에 위원회는 그 건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고려했다.<sup>67)</sup> 1993년 3월 10일 결의문 1993/84와 1995년 3월 8일 1995/83에서 위원회는 결의문 1989/59에 언급된 대로 모든 사람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재확인했고, 회원국들에게 대체 복무와 그 본질에 관한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켰다. 1993년과 1995년의 위원회의 결의문은 또한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표준을 확립하려는 위원회의 활동은 1998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1998년 4월 22일 결의문 1998/77에서 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65 Ibid., para. 153 (3).

66 E/CN.4/1985/25 and Add.1-4.

67 E/CN.4/1993/68 and Add. 1-3.

-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혹은 유사한 동기로부터 유발하는 깊은 신념을 포함하여, 양심상의 원칙과 자유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인식했다.
-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제14조를 상기시켰다.
-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와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에 규정된 대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합법적 행사로써 모든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가 있음에 주의를 끌었다.
- 몇몇 회원국들이 조사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 요구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환영하였다.
- ✓ 그와 같은 제도가 없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특정 경우에 순수하게 행해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임무를 가지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결정을 내리는 조직체를 구성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특정 믿음의 본질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 의무 복무제를 시행하고 그런 조항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그 이유에 적합하고 비전투적이거나 시민적 특성을 띠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징벌적인 성격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 복무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상기시켰다.
- ✓ 회원국들이 그 나라의 법과 관행에 있어서 복무 기간이나 복무 여건, 여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의 혹은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반복했다.
-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옥되거나 반복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했고, 아무도 각 나라의 법과 형사상의 처벌 절차에 따라 이미 유죄 혹은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위반 사실 때문에 다시 처벌받거나 처벌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단락 5)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제시된 바에 따라, 망명자로 정의되는데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개개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적절한 법 조항이 없어서 군복무 수행을 거절한 데 따르는 박해를 두려워해서 본국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망명을 허가할 것을 고려하도록 독려했다.

1998년 이후,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이미 확립된 표준을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의 결의문인 2000년 4월 20일 2000/34과 2002년 4월 23일 2002/45에서 위원회는 결의문 1998/77에 비추어 회원국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현재의 법령과 관행을 겸

토하도록 요청했다. 두 결의문은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게 모든 사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합법적 실천으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 형태의 복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실례의 분석과 기록물을 준비할 것, 그와 같은 자료들을 정부들, 국가 인권 기구, 특별 기관,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수집하고 이런 편집 내용과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격년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다음 보고서는 2004년의 제60차 회기에서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제2부 규약 감시 기구

규약 감시 기구들 혹은 위원회들은 주요 유엔 인권 규약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규약 기구들은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나라들의 준수 여부는 인권이사회에 의해 감시된다. 인권이사회는 (1) 회원국측의 정기 보고서를 조사하여 주요 관심사를 요약하고 회원국측에 적절한 제안과 권고를 하는 결론적인 관찰을 채택한다 (2) 규약 하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사회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일반논평을 부연한다. 그리고 (3) 준사법적 자세로 개개인의 제소를 조사하고 견해를 채택한다.

### a.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1993년 7월 30일, 인권이사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2를 채택하였다. 일반논평 22는 그 가운데서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가 제18조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반논평 22의 11항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많은 개인들이 제18조에서 언급하는 자유에서 기인하는 권리에 근거하여 군복무 수행을 거절(양심적 병역 거부)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그와 같은 주장에 답하여, 점점 많은 수의 회원국들이 그들의 법으로 순수하게 종교적 혹은 그 외 군복무를 금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시민들의 의무 군복무를 면제하고 국가적 대체 복무를 시행하였다. 규약은 명백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를 표명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에 심각하게 상충되므로 이사회는 그와 같은 권리가 18조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권리가 법 혹은 실례에 의해 인정될 때, 특정 종교의 본질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간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복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차별도 없을 것이다. 이사회는 회원 당사국들에게 제18조에 명시된 권리에 근거하여 어떤 조건의 사람이 군복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 대체 복무 기간과 본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권했다.<sup>68</sup>

68 CCPR 일반논평 22,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Art. 18): 30/07/93, para. 11

b.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이사회의 입장은 여러 해 동안 발전되어 왔다. 1985년부터의 초기 결정 중 한 가지에서 이사회는 핀란드 시민인 L.T.K의 청원을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L.T.K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의 신분이 핀란드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군복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형사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면서 ICCPR 제18조와 제19조를 위반한 핀란드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 규약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권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특별히 제8조의 3항(c)(ii)를 고려해도 규약의 제18조나 제19조 어느 것도 그런 권리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 그 자체가 규약의 어떤 조항을 위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어떤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자신이 법과 상반되는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sup>69)</sup>

일반논평 22을 채택한 데 뒤이어, 이사회는 제26조와 관련된 것으로 고려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몇몇 사건을 다루었다.<sup>70)</sup> 예를 들어, 1993년에 이사회는 Henrikus A.G.M. Brinkhof가 26조 위반의 희생자가 아님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는 단지 한 그룹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면제시키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면제시키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18조에 관한 이사회의 일반논평을 참조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회원국측에 의해 인정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의 특성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이사회는 당사자가 평화주의자로서의 그의 신념이 네덜란드에서의 대체 복무 제도와 양립하지 않는다거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허용된 특권적 대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의 그의 권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히지 않았음을 고려해서 Mr. Brinkhof가 규약의 26조의 희생자가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견은 정부 당국이 군복무와 대체 복무에 대해 똑같이 강경하게 거부할 수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 당국이 이런 관점에서 어떤 차별이라도 없앨 목적으로 관련 규제와 관행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sup>71)</sup>

1999년과 2000년 중에 이사회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여러 청원들을 검토했고 제26조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Frederic Foin 대 프랑스 사건에 대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규약 위반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8조에 의해 정부 당국은 군사적 성격의 봉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적이지 않다면 대체적인 국가 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는

69) Communication No. 185/1984, L.T.K. v. Finland, para. 5.2.

70) ICCPR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은 어떤 차별이라도 금지하며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혹은 사회적 균원,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것을 보증한다.

71) Communication No. 402/1990, Henrikus A.G.M. Brinkhof v. The Netherlands, para. 9.3 and 9.4.

프랑스 법령 하에서 군복무 12개월에 비해 국가적 대체 복무 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규약의 제26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제26조가 모든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사회가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법과 관행이 군복무와 국가적 대체 복무 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경우에 관련된 특정 복무이거나 그 복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긴 기간의 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제시된 이유는 그런 표준이나 혹은 당사자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표준에 합당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 이사회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현 사건이 관련된 규약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하여 차별당했기 때문에 제26조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sup>72)</sup>

Richard Maille 대 프랑스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규약 위반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8조에 의해 정부 당국은 군사적 성격의 봉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적이지 않다면 대체적인 국가 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는 프랑스 법령 하에서 군복무 12개월에 비해 국가적 대체 복무 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규약의 제26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제26조가 모든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사회가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사회는 법과 관행이 군복무와 국가적 대체 복무 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경우에 관련된 특정 복무이거나 그 복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긴 기간의 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제시된 이유는 그런 표준이나 혹은 당사자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표준에 합당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 이사회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현 사건이 관련된 규약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하여 차별당했기 때문에 제26조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sup>73)</sup>

72) Communication No. 666/1995, Frederic Foin v. France, para. 10.3.

73) Communication No. 689/1996, Richard Maille v. France, para. 10.4.

Marc Venier and Paul Nicolas 대 프랑스 사건에 대해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당사자가 대체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떤 특정 조건의 규약 위반 여부이다. 이사회는 규약 제8조에 의해 정부 당국은 군사적 성격의 봉사,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는 그것이 차별적이지 않다면 대체적인 국가 복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자는 프랑스 법령 하에서 군복무 12개월에 비해 국가적 대체 복무 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적이고 규약의 제26조에 규정된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제26조가 모든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입장은 반복한다. 이사회가 반복하여 언급한 것처럼, 어떤 차별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회는 법과 관행이 군복무와 국가적 대체 복무 간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특정 경우에 관련된 특정 복무이거나 그 복무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것과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 긴 기간의 봉사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사건에서, 정부 당국에 의해 제시된 이유는 그런 표준이나 혹은 당사자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의 표준에 합당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진실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 이사회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은 현 사건이 관련된 규약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에 근거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당사자가 그의 양심적 신념에 근거하여 차별당했기 때문에 제26조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밝힌다.<sup>74)</sup>

1999년에 이사회는 제18조에 비추어 Westerman 대 네덜란드의 청원을 고려했지만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사회에 제기된 질문은 군복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사자의 경우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사회는 국가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조항들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면제되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들과 주장을 고려하였으며, 이 법적 조항들이 제18조의 마련과 조화된다고 본다.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가 다른 일반논평 22(48), 11항 참조. 이사회는 당사자가 '폭력적인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 강력한 양심적인 거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본다. (5항) 이 사건의 경우에 이사회가 정부 당국 대신 이 사건의 평가를 내려야 할 아무 근거가 없다.<sup>75)</sup>

74 Communication No. 691/96, Marc Venier and Paul Nicolas v. France, para. 10.4.

75 Communication No. 682/1996, Westerman v. The Netherlands, para. 9.5.

이사회의 여섯 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밝힌 이유들은 그의 거부가 규약의 제18조에 의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합법적 표명의 일부임을 알 수 있고 정부 당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위를 부인하고 투옥시키는 식으로 규약의 제18조에 근거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다.<sup>76)</sup>라고 함으로써 이를 제기했다.

이사회가 27조<sup>77)</sup>에 비추어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들이 몇 건 더 있었다.<sup>78)</sup>

### c.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이사회는 결론관찰과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좀 더 언급하였고 다양한 회원국들에게 조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의 그루지야 공화국에 대한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군복무가 18개월인 것과 비교하여 비군사 대체 복무가 36개월이라는 사실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이사회의 염려를 표현하였고,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계있는 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부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규약의 제18조와 제26조와 일치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인 군복무 징집 대상들이 군복무와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기간의 시민 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sup>79)</sup>

베트남에 대한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규약의 제18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위를 위한 법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고, 군복무 징집 대상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지위를 요구하고 차별없이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sup>80)</sup>

키르기스탄의 결론관찰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기 사용의 금지를 가르치는 등록된 종교 단체의 신도에게만 허락된다. 이사회는 정부 당국이 대체 복무에 대해 군 징집자의 복무 기간보다 두 배의 기간을 부과하는 이유와 고등 교육자들이 군복무와 대체 복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을 근무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긴다. (18조와 26조)

76 Ibid, Individual opinion (dissenting) by Committee members P. Bhagwati, L. Henkin, C. Medina Quiroga, F. Pocar and M. Scheinin.

77 ICCPR 제27조에 의하면, 민족적, 종교적 혹은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그런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체 성원들과의 공동체에서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거나 그들 자신의 종교를 공언하고 실천하거나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78 Communication No. 511/1992, Ilmari Lansman et al. v. Finland; Communication No. 549/1993, Francis Hopu and Tepoaitu Bessert v. France.

79 CCPR/CO/74/GEO (19 April 2002), para. 18.

80 CCPR/CO/75/VNM (26 July 2002), para. 17